

제409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8월25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2)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1)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8)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1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1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1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21.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2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3)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3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37.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4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4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46.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3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2) 3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1) 3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8) 3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 3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 3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 3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3
1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4
1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4
1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4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4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4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4
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4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4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4
21.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4

2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4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4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4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3)	4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4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4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4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4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4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4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4
3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6.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4
37.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4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	4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4
4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4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4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44.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4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4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4
46. 현안보고	4

(10시03분 개의)

(의안번호 2119262)

○위원장 **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25)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871)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198)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0)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8)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1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6)
 1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1)
 1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1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21.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2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3)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3)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2)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0)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7)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2)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7)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7)
 3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37.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3)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4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1)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8)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4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46. 현안보고

(10시04분)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43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5항까지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의사일정 제46항 현안보고 등 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3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이채익 위원, 한기호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7일과 8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과 퇴직한 군인 및 군무원도 공제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군 사관학교의 재단법인 등도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숙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주요 행정법제도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되 각 개별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 급식의 대상에 군무원 등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군급식기본법안으로 수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일정한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도 식재료 조달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 임병헌 의원, 한기호 의원, 김영배 의원, 윤주경 의원, 윤건영 의원, 유경준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법에 병역의무 기피·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병역명문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에 한해 수행 과정과 종료 결과를 함께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 정성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하도급자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국회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및 45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신원식 위원입니다.

기동민 위원, 배진교 위원, 안규백 위원, 윤후덕 위원, 이현승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을 도입한 인사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접체계 운영비가 감소하지 않아 비용이 오히려 늘어났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도 의문이 있어 사업의 계속 유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간부확보장려사업은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은 장교가 임관 후 징계 또는 형사처벌로 제적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확인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유가족 시료채취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31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35건 등 총 9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군수여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편성 시에는 군수여비를 현실화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대체역 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사전회의 개최를 늘려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원 수련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병역판정 전담의사 수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홍보 등으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확충하여 수련 참여율을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이·전용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한편 이·전용 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여력과 시장 가격을 고려한 원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C-130H 성능개량사업은 국외 구매에서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국내 개발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는 헬기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C-130H와 같은 수송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정 15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16건 등 총 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방위사업청은 2024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시 이·전용 등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률 심사와 결산 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김병주 위원장님,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방금 법안심사소위원회 김병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3페이지에 보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을 하면서 주요 내용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정보통신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한기호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망으로……

○위원장 한기호 예, 망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제2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민기 의원(2건) 및 전봉민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설훈 의원님 그리고 민홍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성일중 의원 및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인급식기본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으로 먼저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및 제2장,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과 제4장의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0항까지 윤주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및 34항 설훈 의원 및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및 42항 설훈 의원 및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3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5항 국방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급식기본법안 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통해 국방업무를 보다 발전시키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주신 예산이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12월 26일 조사결과를 의결하고 내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인 법정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과 신원식 결산심사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주 법안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과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청 소관 5개 법률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왜냐하면 우리 현안보고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두 분 위원장님과는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먼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송기춘 위원장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안규백 위원 군사망진상조사위원회가 9월 13일로 종료되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난 5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내서 달성하느라고 노력하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창군 이래에 우리 군 사망자나 또 순직되고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약 3만 8000명, 지금 연장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의 명예회복이나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미순직된 분이 3만 8000, 9000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활동한 것은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서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한데 활동 시기에 제한이 있고 인력을 감안하면 직권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9000 가까이 되는 이분들의 죽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1853건 정도이고요, 이에서 구제된 분들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군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MB 때도 구성이 됐다가 해체돼 가지고 그동안의 조사 역량과 분석, 데이터 이것들이 사장돼 가지고 다시 재가동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아닙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게 또다시 연장이 안 되고 해체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한 적 있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일단은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의견을 줬는데 오히려 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데 기관을 재구성할 때 결국은 1년 또는 2년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관할하는 사건이 군인뿐만 아니라 전환복무된 전·의경, 경비교도대원까지를 포함하는데 현재의 조사시스템으로는 군에서 전·의경의 사망에 관련된 조사를 할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방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양당의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은 이 법안의 연장의 필요성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장관님께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또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가 만료돼서 해체되더라도 그 업무는 국방부에서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있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업무는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도 이게 잘 진척이 안 됐는데 또 일반인들의 접근이, 유가족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국방부로 다시 이관된다고 해서 이게 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조사 시작이 진정이 접수되면 그 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진정 접수된 것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추가되는 것들은 국방부에서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전·의경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지금 보고대회가 9월 며칠날이지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9월 13일

10시입니다.

○**안규백 위원** 13일 날 10시에 있는데, 저도 참석할 예정인데 장관님께서 가급적 시간을 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여건을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연장해야 되는 법안을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9월 달로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법안소위에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그때 점검을 해 보니 국방부가 아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인계를 받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인계받을 준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9월 초에 법안소위에 다시 올려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 장관님 인계 준비 오늘 보고하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전사망민원조사단 여기서 인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할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차관한테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아주 토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계준비를 그때 점검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고 그 점검을 우리가 해 보고 이것을 다시 토의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인계받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오전에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오후에, 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당시 담당자도 왔었잖아요. 여기 있나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김병주 위원** 이걸 인계받으려면,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110명 편제입니다.

○**김병주 위원** 110명이잖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시행령에는 84명……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조사본부에서 임무를 인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방금 말씀드린 그 조사단이 조사본부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조사, 그러려면 거기의 인원도 현재보다 훨씬 더, 지금 진상위원회만큼은 인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예산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연 70억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인수인계에 대한 준비가 그때 점검해 보니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인원 증원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진정 접수된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 기간보다는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조사단하고, 그 규모는 훨씬 더 작은 규모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오후에 장관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아마 차관이 만날 소위원회에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위원회에도 많이 참가했었는데 오늘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준비가 안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오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토의됐으니까 오후 첫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은 좀 계셔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김병주 위원** 보고를 한번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토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한기호** 다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군인사사망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1차 연장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그리고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들은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가의 모든 조직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전번에 법안소위 할 때 여야 구분 없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또 국방부에서 11명인가가 파견이 돼 있는 걸로 그때 파견을 확인을 했거든요, 파견 인원들이. 그래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직의 우수한 분들을 일부 흡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 또 일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많은 혈세를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걸 대비해서 조직 정비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이 조직을 정상적 조직으로 흡수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받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 국방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 연장을 반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인계받아서 진상조사가 요구되면 그에 대한 조사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1차 연장이 됐었고 지금 직원들이 백 분이 좀 넘지요, 위원장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110명인데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성일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국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하니까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월 14일 날 출범이 됐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잘못된 여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놓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 입장에서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도 좀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 국방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9월 13일 날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이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문제가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문제가 없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채익 위원 그리고 국방부도 연장을 감안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해 놨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종료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저희 위원회를 비정상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기존에 수사가 다 이루어졌고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에 대한

재조사이고 군에서 수사한 내용을, 재조사를 반드시 군에서 받는 게 정상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족들이 신청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최근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존의 국방부 헌병대의 조사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죽으면 군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 내부의 처리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 자료를 가지고 사망보상금의 지급이나 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데 그걸 군이 확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게 자신에 관한 사항을 자신이 재판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런 점에서 그건 결코 적절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이 방식이 반드시 정상적이고 유일한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독립된 조사기관에서 군의 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고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 이런 데 부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기호 아니, 먼저 신청하신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가급적 현안에 집중하고 싶어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국가공권력의 상징이 몇 부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물음이 커지고 있는 시기예요, 장관님의 처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처리를 엄정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동안 국가권력기관에서 진행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다른 기관에서 엄정하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좀 들여다봐라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인데, 지금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도 못한 채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 발언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회의도 보면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된 것도 있고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항명사건이나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고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당연히 나와서 국민적 의혹과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지시하고 권유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항명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명령했는데, 국방부장관이 지시하고 권유까지 했는데 검찰단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이고 국방부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고 돌고 있는 집권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지금의 국방부가 쌓여져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는 당연히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고요.

위원장님께 한번만 여쭙보겠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기동민 위원** 지금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 조사단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항명사건에 대해서 검찰단장이 지금, 검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원회에 다시 접수를 한다…… 수사할, 재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일단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마땅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어떤 위

상과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회가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기호** 정성호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호 위원** 예, 같은 취지입니다.

국가조직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또 정의롭게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특별한 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해 왔던 것이예요. 사실 오히려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어떤 국가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또 군사독재 시대 때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생명이 군의 보호하에 있는 그 상태에서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면 이유 여하 불문하고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야말로 투명하게 수사 과정이라든가 처리가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하면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오히려 이걸 위원회에다 맡기고, 국민들이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국방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걸 국방부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장관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특별위원회를 뒤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장관이나 군에 계신 분들은 원래 국방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계속 과거와 같은 관행이, 지금도 채 상병 사건 보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오히려 군사법경찰들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군의 검찰단, 법무관리관, 형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옛날 그대로예요. 장관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서 계속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요 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집니다.

저는 오히려 군을 위해서 또 장관이라든가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특별위원회에 넘겨 갖고 거기서 처리하게 하는 게 맞고, 군에 대한 또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저는……

○위원장 한기호 아니, 지금 여야……

○성일종 위원 아이, 그만하시지요.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관 답변도 한번 들어 보세요.

○위원장 한기호 신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원식 위원 예, 마지막…… 질의는 아니고요, 저 끝나고 장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훈 위원 나는 질의 안 하고?

말씀하십시오.

○신원식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하시고.

이 진상위원회에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여야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요청 사건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직권조사를 자체적으로 무한정 연장하게 돼서 과연, 이 위원회가 있을 그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부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채 상병 사건까지도 연계시켰는데 지금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못 믿고……

지금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사기관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조사기관?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이제 직권조사까지 하겠다고 해서 또 진상규명위가 만들어진단.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인설관식으로 막 만들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로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9월 13일 인계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1차 보고하시고요, 그 보고가 미흡하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인수인계 날짜가 남았는데 오늘 오후 당장 해서 그 보고가 또 미흡하면 법을 다시 검토하겠다

고 해서 사실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것 가지고 정치 공세가 시작이 돼서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이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지금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 진정 건은 다 정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예, 맞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진정 들어오기 전의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 온 경험으로 볼 때 진정할 수 없는 상황들, 돌아가시거나 유족이 없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망사고 중에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던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건 조사를 하고 억울함에 대한 걸 풀어 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했던 것이 우리 과거 현대사입니다. 그걸 풀어 주자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연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물리적으로 힘들겠다 생각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 얘기까지 했는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다음번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다음번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하고 다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못 했던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역사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법은 한시적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서둘러서 이 문제의 절박성을 느끼고 해결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당 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좀 더 하셔서 이 위원회를 1년 정도 살려 놓는 것이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으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한 위원회다, 1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다고 일일이 세세한 건 다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큰 질곡이 있었던 억울한 사안들은 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살려 놓는 이 방안이 가장 현명한 처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5·18진상규명……

○임병헌 위원 제가……

○위원장 한기호 그만 끝내시지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하고 군사망사고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사님하고 제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어제 새벽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번 UFS 연습간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연합방위 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공고화된 안보 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더욱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3시 50분경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미는 연합자산을 증강 운용하여 이를 최초 탐지하였고 발사체는 백령도, 흑산도, 제주 서방을 거쳐 비행하였습니다. 북한은 당일 6시 15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비행 도중 실패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현재 한미가 공조하여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민생과 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2021년 1월 제시한 과업의 조기 달성을 통해 지난 5월의 1차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UFS 연습 등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대응 의지와 능력 과시를 위해 조기에 재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사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것은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 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강하여 운용하였으며 한미는 정보 공유 및 발사체 파편과 잔해의 탐색 및 인양 등을 공조하고 기 계획 U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는 등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3 UFS 연습 및 위리어 실드 연합 야외기동훈련입니다.

이번 연습은 8월 3주차 위기관리 연습에 이어 이번 주 본연습 일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주 8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한 측과 미 측의 각급 부대가 해당 부대 지휘소에서 전투참모단으로 참가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하와이에서 대응반으로 연습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부 훈련에는 중앙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도 정부부처 지휘소에서 정부연습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연습의 특징으로 위기관리 연습에서는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 완화 조치를 연습하였고 본연습에서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통한 전구 작전지휘와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있으며 특히 평시에서 전쟁 상태로 단기간 내에 전환되는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연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연습은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범정부 기관의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점검·숙달하면서 민관군 실제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혼란 목적의 반국가 세력의 준동과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는 연습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병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전쟁 상황으로 고조되는 급박한 상황, 회색지대 도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등 실전적 상황을 조성하여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확

립하였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UFS 연습과 병행하여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30여 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하며 특히 미사일 경보훈련, 연합통합화력훈련, 연합공정작전훈련 등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현시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입니다. 최고위급 협력 의지를 문서화하는 등 3국 협력의 핵심 골격 완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안보 협력 확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하였으며 3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유대관계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의 후속조치 과제로 먼저 북한 미사일 정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022년 11월 정상회의 시 북한의 미사일 정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3자 간 실무협의 및 사전점검 시험 등을 거쳐 이번 회의에서 연내 가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유체계가 가동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등의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와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향후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간 공유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 등 중단된 훈련의 재개와 기 시행 중인 훈련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3자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훈련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함께 한미일 3자 협의를 통해 다년도 훈련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일 정책협의 확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2년 반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국방·군사 협력의 확대 발전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을 연내 개최하는 한편 3자 간 다층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방·군사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님과 그리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이 보고할 순서입니다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식 병무청장님과 방사청장님이 보고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우선 5분씩으로……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한기호 먼저 하신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간단하게 좀 부르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북한의 우주발사체 10월 3차 발사 예고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무기 소요 검토하는 데 전문조직이 필요한데 이 구성도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사청 출연기관의 회계기준 및 자금 집행기준 일원화를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탄사업장의 확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반영도 필요하고 KIDA의 사타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인건비 반영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참석자 중에 불출석자가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바로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검찰단장 출석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인데 사유서 한 장 달랑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재 군 지휘체계와 기강이 붕괴되고 또 법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의혹 투성이입니다.

이번 집단항명죄와 또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논쟁에서의 핵심 키맨은 검찰단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단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단장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수사 중인 사항의 비밀을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나오라고 지시했는데도 불응하고 안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항명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간사가 합의를 했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응하지 않고 또 장관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가지 않은 이런 사항들은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방부가 많이 속이고 뭔가 은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손상이 간다고 봅니다. 오후에 꼭 나오도록 국방부장관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저는 못마땅한 것과 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 저희 야당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 1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 여당에서는 뭐가 감출 게 많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후에 제발 국민의힘 간사님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1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이 출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장관은 오후에 검찰단장 출석을 꼭 하게 해 주고 여당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 광역수사대장, 수사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 한기호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원식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단장에 관련해서는 본인 의향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님께서 본인 의향을 물어보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부터 광역수사대장, 수사 관계자는 지금 항명사건에 대한 참고인 및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배……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아니, 먼저 신청……

○안규백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이 의사진행발언하면 여당은 품고 좀 넘어가지 그걸 일일이 원맨 원맨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그래야 공정하지요.

○신원식 위원 30초밖에 안 했어요, 저는.

○안규백 위원 뭘 그것 가지고 또 미주알고주알 그냥……

○위원장 한기호 아니, 왜냐하면 김병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당에다 대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에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대답을 해야지요.

○안규백 위원 내가 위원장을 익히 했어요. 했으니까 그걸 잘 좀……

○위원장 한기호 안규백 위원장님하고 한기호 위원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니, 저 30초 했어요. 30초, 딱.

최대한 빨리, 길게 안 하고.

○위원장 한기호 예, 말씀하십시오.

○배진교 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이 이행을 안 한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검찰단장의 경우에는 이번 채수근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된 또 항명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분 검찰단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사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수사상 비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비밀 유지 등의 의무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아니, 지금 검찰단장이 수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항명사건에 대한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묻고자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한 만큼 연락을 취해서 오후에라도 참석하고 현안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결재에 확신 없었다는 국방장관의 해명 후폭풍, 이런 무책임에 나라 맡겨도 되나?’, 언론기사의 제목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전체회의 후에 국방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언과 기사 그리고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반성은커녕, 사과는커녕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단장 문제를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지, 정부는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의무경찰 부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군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꺼낸 부분들이 정말 이게 국방부장관하고 논의를 한 건지, 대통령실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전체회의 후에, 이게 상임위를 열면 의혹이 해소되고 뭐가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의혹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요. 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졌던 것이 육군 50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해병대 관련된 군인들 말고 육군 50사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세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50사단장과 50사단의 작전통제에 대한 것은 조사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 이첩된 이후에 경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체회의 때 보니까 작전통제권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작전통제권이 있는 50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지금처럼 ‘맞다. 수색작전에 한해서는 50사단장이 지휘권,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50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확인이 안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해병대원 사망사고 직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사고를 수사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고 수사를 진행을 한 건가요? 이게 장관님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병대 수

사단장이 조사·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는 누가 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해병대에서 사고난 경우는 바로 거기의 관할 수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광역수사대가 관할 수사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50사단장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일반적인……

○송옥주 위원 이런 작전통제권 같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사망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때 여당 위원님들께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망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작전 전체에 대한 어떤 그건데……

○송옥주 위원 아니, 작전 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송옥주 위원 이 부분은 사망이 핵심인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수색 작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될 걸로 봅니다.

○송옥주 위원 그것 경찰 조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추가로 국방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가조사하거나 수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원래 이렇게 타 작전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가 대민지원을 할 때는 그 작전통제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님니다.

○송옥주 위원 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5분이어서 그러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하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관님께서 국방부에서 재검토한 것은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회피나 은폐 그런 보고로 보고 있고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재검토 결과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이 경찰 수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검찰단장이 장관 지시에도 불응하고’ ‘항명이다’ 이런 표현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검찰단장의 건의를 제가 받아들이어서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겠다 해서 제가 국방위에다 다시 요청을 해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먼저 해병대사령관께서 훈련 중인 관계로 정종범 부사령관님께 제가 천천히 물을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장 지휘관의 카톡 내용을 살펴보면 7월 18일 날 해병 1사단장의 1차 지시 전달 내용이 장화까지 깊이로 수색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 명령은 적절했다고 봅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위원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임병헌 위원 하기가 어렵다?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하기가 제한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예.

포병 3대대 지역은 상류 지역이라서 강물에 들어가 수색해도 별문제 없는데 포병 11대대 지역

은 강물이 하류 지역이라서 물이 깊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위원님, 동일한 답변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도 답하기 어렵습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예, 전부 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사단장이 7월 19일 날 오전에 포병 7대대 지역을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그것 또한 사단장 동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하나도 답변을 못 해?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예, 답변이 제한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확인인데, 방문했고 안 했고 이런 것은 잘 모릅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

○임병헌 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니까. 포병 11대대 인접 지역은 강물이 깊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포병 7대대 지역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위해서 구멍이나 고무보트 등 사단에 충분히 있는 안전용품을 바로 포항에서 예천으로 수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위원님, 동일한 답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오늘 나온 의미가 없잖아요,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해병대와 관련된 다른 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사령관에게 하기로 하고, 국방부 김진락 수사단장 나오셨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재조사결과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원본과 함께 경찰로 이첩됐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어제 이첩했고 위원님, 저희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건기록 원본을 재검토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 재검토입니까, 재조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재검토한 결과를 어제 어디로?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를 했는데 재검토에 걸린 시간은 얼마쯤 걸렸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8월 9일 날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1광역수사단을 방문했는데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사건 기록은 8월 11일 날 받아서 전체적으로 약 10일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10일간.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재검토에 추가로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없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저희는 기록만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록만으로, 사람은 변수가 없고 기록만 했다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1차 조사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지요, 1차 조사는? 그쪽에서 하니까 모른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것은 해병 수사단에서 했고 저희는 사건 기록에 있는, 현장은 사건 기록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조사는 검토만 새로 했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검토한 결과,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를 했을 텐데 검토는 충분히 잘됐다고 봅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특정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정황은 있고 문제는 식별됐으나 그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인원들은 경찰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통제관으로 있었던 간부 2명이 최초에는 사망자와 같은 조에 속한 것으로 해병수사단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임의로 속한 것이지 상급부대 지침에 의해서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휘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관계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병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사단장과 함께 스피커폰을 들었던 해병대 중수대장과 수사지도관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 부분은 검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 오후에 또 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우리 해병의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졌습니다. 해병대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해병 중령은 해병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의에 살고 충에 죽는다, 무적 해병’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해병대가 너털너털해졌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장관, 해병대가 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 입장에서는, 최근 보니까 검찰단에서 해병대사령관 조사를 두세 차례 했다고 그러던데 해병대는 사령관을 아주 하늘처럼 받들고 명을 따르는 집단인데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사령관을 저렇게 마음대로 검찰단이 왔다 갔다 하고 수사하네’, 지휘 영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조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어제 조사본부에서 순직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8명 가운데 2명은 범죄혐의를 적용해서 이첩했고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송부하였고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재은 관리관님, 법무관리관은 혐의가 불분명하면 사실관계 적시하여 이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김진락 수사단장님, 혐의를 적용한 2명은 혐의가 명확한 것이 사실입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일단 저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통보를……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 혐의가 무슨 내용입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되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 의미로서 이첩을 시킨 겁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단장은, 조사본부가 현장 조사가 아니고 서류 검토 보고잖아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은 검토를 해서 이첩시킨 것이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일반적인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판결과 최소한 기소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이 보기에 국방부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다시피 불과 14일 만의 조사를 통해서 종료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으로 2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그 혐의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일단 명확하다고 저희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는 1차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건이 가능하고 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판

단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1명의 억울함이 없게 수사를 받고 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2명의 부하는 기록 검토만으로 수사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최초 취지대로라면 사실관계 전부를 다 같이 이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록은 다 같이 이첩한 겁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2명만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기록 원본에는 해병수사단에서 혐의자로 잡았던 8명에 대한 기록도 경찰에 인계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이첩시켜야지, 왜 2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혐의를 적시안 했냐는 얘기에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아닙니다. 그 사건기록 전체를 이첩하면서 저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인원은 인지통보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그 정황과……

○**안규백 위원** 그 혐의 내용을 준 것은 경찰에 다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저희가 그렇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사건 전반을 둘러보고 또 보강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현 단계는 저희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것도 아니고 입건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보낸 겁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봤을 때 어던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로 적시만 해서 보내야지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앓고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것도 현장조사도 아니고 서류만 가지고 검토한 내용인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보시는 것은 좀 과한 판단이시고요. 저희들이 군사……

○**안규백 위원** 현장조사가 아니고 서류 검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의지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전체를 다 이첩시켜야지 2명만 혐의 내용을 적시해서 보내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일단 관련 법령상 인지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를 작성하게 돼 있고 또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적시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게 제3자가 봤을 때는 2명 정도는 처벌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것이 국방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해병대수사단장이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제가 수사단장 변호인단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 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1면에 보면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3년 7월 18일 오전 8시 55분 당시에 실종자 수색작전이지만 수변 위주 작전이어서 실제 아침에 실행하며 나눈 대화로 포병7대대장과 11대대장이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포병11대대장도 ‘이것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처럼 하루 1km도 힘들겠다’ 이러면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호 공유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강

물의 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강물의 사진을 포병 전체 단체방에 올려서 같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실제 최 중령이 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 장과의 통화에서 강물의 위험성을 알렸고 그래서 도로 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 구간에서만 수변 정찰을 실시하라고, 이때까지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 이 중령은 책임작전지역을 정찰하며 특히 강물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며 계속 사진을 찍어 그 위험성을 알렸다, 그리고 최 중령도 책임작전지역을 정찰하며 ‘내 쪽은 도로 정찰 길도 없다’ 이렇게 서로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중령과 최 중령이 자신들의 대원들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직접 내렸다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최 중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대장이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어찌지?’ 그러니까 ‘구조대장이—7여단장이지요—여단장이 수변 아래까지 정찰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할 경우 적어도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 걸 입어야 한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을 현장에 있던 대대장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수트라도 가져오면 할 수 있는데’ 또 최 중령도 ‘가슴 장화와 로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왼쪽 사진 보시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일 사단장님 08시 현장 작전지도 예정’ 그리고 ‘사령관님과 국방부장관님도 7여단 지휘소와 지자체 방문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탐색 및 수색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 정찰 위주 실시하였으나 못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찢러 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발표문 중의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는 적어도 현장지휘관인 최 중령과 이 중령이 아니라 최소한 지휘통제본부장 지시라고 봐야 하

는데 왜 포병11대대장 그리고 7대대장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자료들은 수사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조대장’ 표현하시면서 사단장 또는 위의 여단장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대장은 군인이 아닙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누굽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소방당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소방당국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구조 전체 총괄은 소방당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구조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을,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진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건 아니고요.

지금 카톡 방에 보면 적어도 대대장급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다섯 번째의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찢어 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런 지시는 누가 내려요? 위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지시는 어디서 내렸는지 좀 더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배진교 위원 아니,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본부도 다 재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 수사기록 가지고 재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수사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장관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카톡이나 이런 데 사단장 지시 및 전파로 하달이 됐습니다, 예하부대까지.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할 때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사단장에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정확한 사단장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사단장의 지시라고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위원장 한기호 오후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진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지난번 2월 달이지요,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방부가 항의를 했지요. 항의를 하고 공식 표기를 바꿔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훈련기간 내내 이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 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 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고 미 국방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명도 못 듣고 그냥 일본해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목표가 뭐니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10배는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GDP 대비를 해도 그렇고 GNP 대비를 해도, 뭘 보더라도 10배는 훨씬 넘어요. 국력 비교를 제대로 하면 30배도 더 될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험한 말로 1 대 1로 우리가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요. 더군다나 양보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무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가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꺾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수니까? 일본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모자람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무찌릅니까? 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일본과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동해를 왜 일본해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확하게 항의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안 될 때는 비상한 수단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국방부장관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나 일본해라는 명칭 문제는 저희들이 훈련 지역을 정할 때 그 명칭 사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국력 비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를 하셨는데……

○설훈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얘기 들어 봐야 소용없는 이야기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핵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장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해에서 했습니까, 남해에서 했습니까, 동해에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주도 남단 지역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은……

○설훈 위원 동해에서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동해 지역도, 그것은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설훈 위원 일본해라는 표기를 미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항의했지만 못하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거세게 항의하고 이걸 주권 침해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떻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느냐,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를 양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설훈 위원 아니, 훈련 지역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동해로 표기해야 될 지역은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동해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

○설훈 위원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설훈 위원 그런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미국이, 미 국방부가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항의하고 최소한 ‘양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관철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했을 때, 트럼프가 일본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공식 항의하면서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 국방부가 한 얘기가 ‘양쪽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양쪽이, 일본과 한국이 합의해서 잘 정리하길 바란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훈련 지역은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 그냥 묵과할 겁니까, 장관으로서,

더구나 국방장관으로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설훈 위원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설훈 위원 그러면 미국 정부에 당당하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 정부는 동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확고한 입장이라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을 막아 내면 돼요.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일본까지 왜 끼어들어요? 그건 일본의 국익에 맞춰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 양보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고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묵과하고 들어간다는 것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국방부장관이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북한 핵이 없다면 굳이 일본까지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제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이 늦게 오셨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윤후덕입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질의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해병대의 수사에 대해서 장관님이 20시간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일을 해서 가지고 일부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시간 내에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외압. 누가 외압을 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외압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 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재검토를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첫날 보고받을 때 문제점 의혹 제기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2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이 다음 날 일정 관련해 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윤후덕 위원 아니, 장관님 말씀이 신뢰가 안 돼요. 왜? 전날 결재를 했거든요. 결재를 한 걸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대령에 대해서 지금 아주 억울한 항명죄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잖아요.

이것만, 두 가지만 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관리관이 법리 검토를 한 게 이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였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법리의 원칙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이첩을 했잖아요, 경찰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거기에서는 2명은 범죄행위를,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 4명은 거기에 사단장이 있고 여단장이 있잖아요. 현재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법리 검토가 특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특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법리 검토였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찰에 넘긴 것에 4명의 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범죄혐의는 분명히 있지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보다

판단하기 어렵다,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넘긴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특정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고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혐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은 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아, 이게 축소하고 은폐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축소시켜서 보냈구나’ 이렇게 느끼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경찰에 가면 다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가 될 일이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된 데에 사단장·여단장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보낸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다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없다라고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지요. 없다가 아니고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7월 30일에 결재했을 때, 범죄행위에 대해서 장관이 결재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해군참모총장도 그날 오전에 결재를 했어요, 같은 내용을. 그리고 28일날은 해병대사령관이 또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어떻게 문책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밑에서 계속 결재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결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내가 결재를 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을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것은, 이 문서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한테 결재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이첩할 때는 관할 수사단장이, 수사 책임자가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군에서 여섯 건이 있었지만 한 건도 국방부에 보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알았어요. 오후에 그것은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라고 한 지시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윗선에서부터 그런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기록에는 윗선에서 내려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 수사에서 그것을 또 누락시켰네요. 국방부 수사본부에서는 그것을 누락시킨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그게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더 조사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결론으로 인해서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없다가 아니라 대대장들은 다, 대대장부터 시작한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대대장한테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 지시가 없이 허리까지 들어가……

○**위원장 한기호** 오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장관님 그렇게까지, 사실 자체도 지금 무위로 만들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자꾸 의혹 의혹 말씀하시는데 있는 조사기록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의혹이 아니라 이미 보도되고 그리고 또 확인된 얘기들 아닙니까, 카톡에 다 나와 있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조사기록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조사기록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의혹 의혹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후덕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이 건 관련해 갖고 두 번의 현안질의 때도 그렇고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 장관께 일종의 충언 또는 조언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이것 별것 아닌 겁니다. 사망사건 자체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의 처리 과정 자체가 그냥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관련 법에 의하면 입대 전 사고라든가 또는 사망사건,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군사법기관이 수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재판권도 없고. 당연히 민간경찰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해야 됩니다.

아까 국방부 수사단장이 얘기를 이상하게 하던데 1차 수사기관으로서 혐의 유무 판단하고 기소 여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이따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아까 제가 기소한 게 아니라고 중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처음에 재조사냐고 그러니까 재검토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법무관리관이라든가 군사법기관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군대는 보니까 인지통보서 쓰게 돼 있으면 거기에 피의자 혐의를 적게 돼 있더라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있는 사실관계만 판단해 가지고 관련자1, 관련자2, 관련자3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랬으면 끝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게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그랬다 그런 식의 발언

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관계가 없다,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단장 얘기도 이미 사실 2명은 혐의가 있는 걸로 적시가 됐고 4명은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아무 관계 없다고 돼 있던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정리를 하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군사법경찰들은 그 관련 업무에 굉장히 오래 종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수사관들, 대개 준위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씩 이것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반국민들과 관계된 이런 현안들이 생겼을 때 판단할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목소리가 제일 정확해요. 국방부 안에서 그냥 펜대나 굴리고 있고 재판이나 두드리는 사람 얘기 들어 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 문제 됐을 때, 누가 어떤 청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여론이 이렇게입니다. 여론의 향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맞았던 겁니다. 나중에 수사단장이 만약 여기서 이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렇게 적시한 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경찰에서 최종적인 판단 해 가지고서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찰에 넘어서서, 어쨌든 경찰은 국방부에서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기속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혐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혐의 있으면 해 가지고 검찰에 넘길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걸로 종결할 것이고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의 신청할 것이고 또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다면 다시 항고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할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예요.

이 사건은 이렇게 안 끝납니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 검찰수사 단계, 재판에 넘어가고 계속 언론에서 관심 갖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워 가지고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죄의 수괴로 입건해 가지고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리 없을 겁니다.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자, 분명히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검찰단에서 했을 겁니다. 이런 참모들 쓰면 안 돼요, 장관님. 이게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 주겠습니까? 이게 누가 사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보실에다 청탁을 해 가지고 아니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관한테 누군가 이진 다시 검토하라고 조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단항명죄의 수괴라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항명죄로 바꿔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되는데 저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방부에서나 또는 법무관리관의 판단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 항명죄도 사실은 혐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서 당연히 또 민간법원에 가서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이 정권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음 정권 가 가지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이 길게 보고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잘 수습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갈지, 정말 옆에 참모들 제대로 잘 두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혐의 유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 없이 그냥 관계자1부터 8번까지 번호 붙여 가지고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제발 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해병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장관이 사실 이런 데 신경 쓸 겁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우주항공 발사해 가지고 난리법석 피우고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어떤 때예요? UFS, 을지포커스훈련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국회의원들하

고 갑론을박하고, 제발 부탁인데 장관이 이런 면에서 좀 잘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외부로부터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8명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초급간부들 2명은 불러다니면서 수사받고 아무 죄 없는 2명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

○정성호 위원 장관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지는 거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하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혐의 있다고 넘겨진 대대장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다 가고 처음부터 보고, 제가 만약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꼭 부를 필요도 없어요. 뭘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가 1년 남짓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제도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런 법적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폭탄 던져진 거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검찰, 법원 그다음에 항명죄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계속 이게 된다고 하면 언제 시한폭탄 터질지 몰라요. 이게 계속 문제 되는 거예요.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잘 처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께서 일본해 문제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요 일본해·동해가 공동표기될 수 있도록, 특

히 이번의 한미일의 굉장히 높은 안보협력은 당연히 수요가, 필요한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양국에 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만일 국제표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면 한미일 훈련할 때만이라도 병행표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한 위성발사체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은 1·2단은 정상비행을 했다, 3단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오늘 KBS 뉴스를 보니까 2단부터 이상이 있었다라고 나와서 저도 여기저기 미사일 전문가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양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단, 북한 측 발표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KBS 보도가 맞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 확인된 국방부 결과는 어쨌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2단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일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근거도 확인된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최종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 ADD하고 미 측 전문가들하고 지금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단부터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아직 북한 측 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지난 5월 31일 날 위성이 실패했을 때는 아예 그것은 2단부터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2단 점화가 안 됐습니다.

○신원식 위원 점화 자체가 안 됐고, 이번에는 점화는 됐고 비행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3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2단 비행까지 완전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중간결론을 내도 될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탐색·인양 작업을 군에서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처럼 현재까지 부유물 같은 걸 발견한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탐색지역에 몇 개가 떨어졌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 부유물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원식 위원 부유물이 떨어진 건 확인됐는데 부유물 자체가 해상 위에는 확인이 안 됐?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부유물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인양을 할 예측지점은 대강 나왔겠네요, 어느 정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는 5월 발사 때와 달리 북이 통보한 항행경보 밖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방위성 발표는 신뢰해도 될 만한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3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신원식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1단체, 페어링 그다음에 2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2단체 지역은, 그러니까 필리핀 동쪽 지역은 구역에서 약간 벗어났고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비슷한 지역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 발표가 믿어도 될……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본 입장에서는 주로 그쪽 지역을 고려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지난 7월 5일 날 1체, 우주발사체 위성 주요 부분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분석 끝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1차 분석은 끝났고 또 정밀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 나중에 정밀분석하면 2012년하고 2016년 때 국회하고 언론에서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도 국민의 알권리하고, 혹시 너무 상세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는 데 보완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북한의 우주기술은 군사기술로 바로 적용이 되니까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그냥 군사시험했다고 이렇게 동일어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기술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 뒷 질문은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우주발사체 이번에 실패한 건 틀림없는 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1차, 2차 실패했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원식 위원 북한의 시간 문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북한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조금 딜레이되고 촉진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리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1차 분석 정도, 초기분석만 한 것 같네요, 실제로, 초기분석?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제 발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미군하고는 분석자료를 공유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협의하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본 자위대하고는 공유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본 자위대도 GSOMI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은 보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뭔가요, 우리는 자료를 줬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려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병주 위원 사실 일본으로부터 받을 자료는 별로 없지요. 우리가 주로 주는 자료가 한 80~90%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본 지역, 오키나와현 상공을 비행해서 필리핀 오른쪽에 낙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일본 쪽에 정보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UFG 연습하고 있는데 대응반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참가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UFS 연습입니다, UFS.

○김병주 위원 지금 인도태평양사령부 화면에는 동해로 돼 있습니까, 일본해로 돼 있습니까, 대응반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응반에는 당연히,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본해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좀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지적을 했는데 이번 훈련 때 제가 봤을 때는 심중팔구 인도태평양사령부 화면에는 일본해로 돼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해군구성군사령부의 화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확률이 많은데 혹시 해구사 것은 확인해 봤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는 논란이 되면 끝까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실제 한미연합훈련에서조차도 대응반에, 만약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이런 것들이 돼 있다면 큰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관철을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전쟁영웅 흉상을 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육사에서 육사 교내에 있는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라고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결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장군에 대한 흉상인데 이것은 사실 충무관 중앙현관에 설치했는데 이것을 독립 영웅들을 왜 철거하는 거지요? 일본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육사는 가능하면 육군의 창설 또는 육군사관학교의 창설이라든지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육군사관학교는 행사 때 묵념 안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묵념 다 합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한테 묵념을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순국선열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분들이 다 순국선열이고 이런 정신을 기려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 안 하고 이견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이분들 중에 해군, 공군이 있나요?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 다 육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활동, 그런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김병주 위원** 이중에 공산당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김병주 위원** 그러면 누구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공산당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서거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도에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의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기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일 관계가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선배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내 기념물을 정비하는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해군에 홍범도함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군의 홍범도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만들어진, 건조된……

○**김병주 위원** 박근혜 정부인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결로 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이런 영웅들에 대해서 기려야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철거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국방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지도해 주세요. 지금 시점에서 오해받기 아주 딱 좋은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진짜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요 우리가 존경하고 해야 되는 분이요. 그런데 왜 흉상을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장관실 앞에 있는 흉상들 다 옮겨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오해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나 군은 늘 이런데 왜 자꾸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군은 오로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여튼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에 대해서는 늘 존중해야지 이런 것들을 일부 정치적인 각도로 보는 정부나 또는 당이 있으면 거기에 왜 부화뇌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관님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관님의 일성이 뭐였어요? 정신력 강화 아니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러한 독립정신을 기려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제가 정신력 강화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될 간부를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김좌진 장군이나 이회영 장군님이나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도 공산당과 연루했던 분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분들은 아닌데……

○김병주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까지 그런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이 계기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 육사에는 군이 독립운동보다는 그래도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만 관련된 인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념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설훈 위원 그런 개념 설정이 세상에 어딴어!

○김병주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왜 군을 그렇게 짧게 봅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 후손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조선시대 때 장군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아야 되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김병주 위원 왜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장군들만 존경받아야 되는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만 존경받는다는 말씀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육사에서 개념을 설정할 때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

○김병주 위원 육사가 개념 설정을 그렇게 적게 하니까 근시안적인 장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천 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군과 국가를 지킨 모든 사람들을 조명해야지. 지금 장관님 논리대로 하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도 다시 조명해서 없애 버리고 다른 데 보내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도 탄 데 보내야 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역사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강감찬 장군은 고려시대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야 되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역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교육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굳이 육사 교정에 그러한 조형물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동맹 군사 공원을 만들어서 백선엽 장군하고 맥아더 장군을 뱀 플리트 장군 옆에 동상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또 논란의 대상이고 독립운동한 유공자들 이런 분들은 탄 데로 보내고, 중요한 자리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병주 위원 물론 뱀 플리트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때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같이 만들어야 되면 몰라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분들도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존중받아야 되지요,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어디냐 하면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한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요? 헌법정신이 됩니까?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장군님……

○김병주 위원 3·1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장군님,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부탁하는데 제발……

○이채익 위원 아니, 시간……

○김병주 위원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육군사관학교나 군사기관이나 군이 정치의 휘둘림을 받지 않고 정쟁의 휘둘림을 받지 않게 장관님이 좀 지켜 주세요.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기동민입니다.

할 말이 산처럼 많은데…… 갑시다.

상비병력 50만 무너졌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단 정원은 50만 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 약간 미흡한……

○기동민 위원 2038년 정도 되면 40만까지 깨지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38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현 유지가 안 됩니다.

○기동민 위원 병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근본적인 혁신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기동민 위원 총리하고 경찰청장이 의경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상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동민 위원 상의했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기동민 위원 아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그냥……

○기동민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즉흥적인 발상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가 놀아나지 마시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총리실에서도……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기동민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얘기드리는 게 좀 뭐한데요. 또다시 채 상병과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검찰단장 혹은 수사단장이 보고를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경우는 보고 전결권자를 다시 확인해서 그런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특별히 국민적 관심이 있

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제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동민 위원 보고받지 않는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동민 위원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결재를 하거나 일정한 지침을 주는 것,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지침을 주는 듯한 이런 뉘앙스라든지 분위기, 행동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준 것은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요, 보고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6건도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고 참모진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얘기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 시행령 다 한번 살펴봤어요. 보고받아서 장관님께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잘 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기동민 위원 재작년에 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3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전권을 줬고 그리고 인지하는 순간 지체 없이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 수사 기간이 1개월이나 4개월이나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수사했어요. 왜? 대통령께서 언급을 주셨으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에 때문에 최소한 국방부장관께 보고는 드려야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명령과 지시사항들이 하달이 된 겁니다. 법무관리관 다른 얘기하고 있고 차관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금 보고받지 않는 게 맞았다고 말씀 주셨지만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법무관리관이 권한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본인도 거기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사단장과 다섯 차례 통화를 하고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하고 이런 자체가 이 일을 수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단장에게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수사단에게는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간섭을 하는 거냐? 이걸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이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라고 판단되어서 원칙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맞게 경찰에 이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여 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 사단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 사단의 한 중심에 장관께서 계신 거고 장관의 참모들이 서 계신 거예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총체적인 국가기관 문란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몰고 가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안보실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2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장관께서 그리고 국방부 참모나 국방부 관리들께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는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실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안보실 요청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동민 위원 말씀 해 주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론을 한다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은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전혀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구체적 사건에……

○기동민 위원 장관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기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다른 곳에 막 튀

고 있는 거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이라는 게 안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지만 장관에게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이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이거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거듭거듭 고 채 상병의 순국과 명복을 빕니다. 특히 채 상병의 부모님께도 정말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나 봤던 채 상병의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병을 사랑하고 또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특히 정치권은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이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은 심기일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서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채익 위원 이번 문제에 여러 부분이 지적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애당초 군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한 부분은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수사는 아니고요, 변사사건 조사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작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실무

자들의 이해 부족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 또 군검찰 관련자들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정말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될 부분을 너무 많이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논란이 하루라도 빨리 극복이 되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국방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이첩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경찰청에 20여 명의 수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이 조사가 그렇게 어려운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짜증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장관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특히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이 부분의 실무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났을 때 군검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꼭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더 이상 자꾸, 국방위가 이런 문제를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시간 현안 질의를 할 정도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가일층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잠깐만요.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시간이 워낙 없어 아끼기 위해서……

대변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두 분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장관님께, 총리가 의무경찰제 제도입 담화 전에 사전협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사전협의 없이, 1만 5000명의 군 입대 자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전협의도 없이 의무경찰제도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담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재고, 사전협의도 없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리실에서 일단 경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해 보고 필요시에……

○송갑석 위원 그것은 그 뒤에 하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해돼요?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국방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군이 이렇게 취급당한 적이 있나요? 이 정부 들어서 군에 처음 한 일이 국방부를 옆 건물로 옮기는 일이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해병대사령관, 관사에서 내쫓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국방부는 조용합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돌아가면 부하들한테 무슨 말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

○송갑석 위원 일단 나오셨으니까 국방부 대변인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날 국방부 정례브리핑 당시 기자 질의에 답변입니다.

질문,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할 때 대변인은 그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씀했나?’, 답변, ‘제가 거기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바 아니다, 안 했다’. 질문, ‘아니요, 한 사람씩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전혀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질문, ‘아니, 보고 다 끝나고 다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했다’는데, ‘전혀 아니다’……

맞나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 했나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보고 과정상에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 보고 과정상에서 한 말은 없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질의했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국방부장관이 답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은 전하규 대변인에게 내일 언론 브리핑 예정인데 수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대변인이 사단장까지 처벌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청나게 수사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은 맞습니까?’, 이종섭 장관, ‘그 표현은,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오송 지역 사고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제가 또 묻습니다. ‘허태근 실장, 이와 같은 답변을 대변인이 한 것 맞습니까?’, 허태근 실장 답변합니다. ‘오송 사건의 경우에 주요 지휘자들에 대한 처벌이, 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휘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가 되었으니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겠다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보고 과정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끝나고 장관께서 언론 설명을 할 때 어떤 언론의 반응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해서 그런 내용으로 지휘라인상에 있는 분들의 상황이……

○**송갑석 위원** 보고 과정이라는 것이 뭘 말이에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저희는 배석자였고……

○**송갑석 위원** 자, 자……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저희는 배석자였고……

○**송갑석 위원**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할 때 대변인은 그 보고 듣고 뭐라고 말씀…… 그러면 장관 결재 뒤에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예,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래서 아마 이게……

○**송갑석 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인식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송갑석 위원** 아니, 대변인, 지금 장난쳐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사 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언론에……

○**송갑석 위원** 대변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언론이, 국민들이 국방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그 당시 상황의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기자의 그 질문 맥락을 보시면 제가 마치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것처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송갑석 위원** 질문의 맥락이,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한 적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장관과 정책실장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수사단장이 제가 했다고 얘기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송갑석 위원** 뭐가 달라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저는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장관께서 이것을 언론에 설명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 조사 내용이……

○**송갑석 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내가 한마디도 한 적 없고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겁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요,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기자의 질문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송갑석 위원** 들어 봐요! 이 양반이 장난치고 있어, 지금.

조사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변인이 생각하는 인식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갑석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자기가 한 이야기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믿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믿겠어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제가 했던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송갑석 위원** ‘아무 이야기 한 적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송갑석 위원** 조사에 대한 결과건 결과가 아닌건, 그 결과인지 결과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표현도 안 했다면서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대변인 입장에서는 주로 언론보도, 홍보 이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사결과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기자들에게도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송갑석 위원** 이첩보류 지시 관련해서도 브리핑에서는 ‘우리 법무 쪽에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 검토한 결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첩을 대기하라, 홀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게 8월 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8월 10일 차관이 김병주 위원한테 보고를 할 때는 ‘경찰 이첩보류를 지시하고 난 뒤 법무 검토를 지시했다’, 어떤 말이 맞나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장관께서 해병대사령관과 일차적인 통화에서 지시를 하신 것이고 제가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그 이외에 법무관리관의 설명과 평가를 들으시고 지침을 구체화해서서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대면으로 정확한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송갑석 위원** 법사위에서 김영배 위원이 차관한테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나서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게 맞지요?’, 신범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국방부 브리핑할 때는 왜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차관, ‘거짓말을 한 것은 모르겠고요. 사실관계가……’, 거짓말이라고는 안 했지만 차관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제가 언론에……

○**송갑석 위원** 대변인, 그러니까 국방부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국방부대변인 전하규** 제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건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관리관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김진락 수사단장한테 간단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마이크 켜 드려.

○**송갑석 위원**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수사 재검토를 했고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수사 재검토는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사건기록 원본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수사단에서 원본을?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원본을 이관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8월 9일 날 장관한테 하명을 받고 1광역수사단이 포항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태풍 카누로 인해서……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8월 11일 날 받았습시다.

○**송갑석 위원** 8월 11일 날, 됐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장관 결재를 받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고 장관 결재 후에 보류가 되고 뭐가 되고 복잡해지면서 그때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추가조사한 내용이 있고, 이렇다는 내용 알고

있어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사건기록에는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사건기록에는, 제가 편의상 1차 조사, 추가조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계받은 원본은 1차 조사인가요? 그냥 편의상.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계받은 사건기록 원본은 1차 조사고, 2차 조사는 어떤 걸……

○송갑석 위원 해병대 수사단에서 장관 결재를 받은 이후에 언론 브리핑 그다음에 경찰 이첩 이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가조사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고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 기록상에 보면 7월 3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하고 7월 30일 이후에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거기에 합철돼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제가 편의상 1차 조사, 추가조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겨 받은 원본에는 그 추가조사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는 해병 1사단장에 대한 조사, 그것이 서면조사건 대면조사건 조사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아닙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진위가 그 진술조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관련자들이 방어진 차원에서 제공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우리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장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사단장의 조사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를 제

기했던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됐다, 전체적인 조사는……

○위원장 한기호 복잡하니까 오후에 하세요.

○송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이 법리 검토 후에 이첩보류했느냐, 이첩보류하고 난 다음에 법리 검토했느냐 그 차이는 제가 처음에 사령관한테 전화했을 때는 검토 없이 보류를 한 건 맞는데 그 직후에 1시간 만에 모여서 법무관리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부사령관 왔을 때, 그때는 일차적인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아마 대변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 오후에 하세요.

○위원장 한기호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BTS에 병역특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을 때 우리 군의 병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크게 봤을 때, 당장의 짧은 국익은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복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기동민 위원님하고 송갑석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국방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은 의무경찰이 다시 재편성이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두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유념하는 게 아니고 장관직을 걸고 막으십시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총리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방부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서, 6·25 전쟁 때 이 사람이 만든 군가를 부르면서 우리한테 침략해 왔는데 이런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의,

국방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오후에 참석한 해병대사령관에게 잠시 이번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입니다.

먼저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간 순직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에도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하여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저 또한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앞으로 우리 해병대는 고 채 상병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여 장병들의 안전한 부대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호국충성 해병대의 모습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묵묵히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채 상병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오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좌석에 안 계신 분들은 그대로 오늘 오전에 진행했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해병대…… 국방부에서 한 수사본부 재검토 결과보고가 저는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 때 여당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가 굳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수사결과가 그대로 이첩됐을 경우 경찰 수사결과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은 경찰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국방부수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는 경찰에 좋은 결과를 주나요? 장관님은 그러면 재검토 결과에 만족하세요? 원래 원하시는 대로 재검토 결과가 나온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재검토를 어떤 원하는 방향을 두고 재검토한 게 아닙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있는 그대로 재검토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뭔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이게 여당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두 분께서 뭔가 통하시는 게 있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를 유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송옥주 위원** 아니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래서 재검토 결과도 보니까 서면으로 검토를 하신 것이고 또 사령관에 대한 조사라든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50사단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빠져 있는 부실한 그런 검토 결과라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유가족분들께서 이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관계자가 말씀도 하시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제가 유가족이라면 참담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 그러면 경찰 조사까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건가? 국방부에서 나온 결과가 그냥 짜고 치는 뭐고 답정너처럼 뻔히 보이는 거라 그러면 다음을 준비해야 되나?’, 어떤 참담함이 묻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기속도 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국방부에서 나온 재검토 자료는 거기에 기속되지도 않고 또 경찰과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유가족께서도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약간 허탈감이 묻어 있는 답을 하시기보다는 유가족을 좀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불식도 시키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유가족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왜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검토했다거나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재조사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조사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고 그것 또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는 하지 않

았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재검토만 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재검토한 결과대로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조사하는지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군대 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얘기이기는 하지요. 이런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발표 이후에 해병의 포7대대장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지시도 했고 또 허리까지 입수하는 것을 상부가 허가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모르겠다, 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관님도 군 복무를 오래 하시고 국가에 충성을 하셨지만 이 대대장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복무하는 부분들인데 이 대대장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안을 하고 이런 즉각 반발을 하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대대장은 그냥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그리고 억울함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부하가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처벌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상급자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랑 또 정부에 기속되시는 많은 고위급 공직자들께서는 모든 책임을 그냥 법률적인 책임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짧게 하긴 했지만 제가 본 부분들은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임성근 1사단장이 수사 진술한 내용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이건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지휘관으로서 무한책임은 통감하지만 문

제는 물에 들어간 현장 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에 들어간 현장 부대는 그냥 어디서 지시도 안 받고 자기들이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통감 못 하고 공감을 못 하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는 부분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수사 진술 내용을 보니까 '7월 15일과 16일 협조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간부들과 군인권센터를 통해 보면 7월 15일이 아니고 17일 날, 그것도 정확한 공지도 없이 부대 투입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정확한 정황과 준비 상황과 예방과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변명만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부도덕한 사단장이 군을 지휘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께 해임도 건의하고 수사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해병 1사단장도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부하가 그런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현장 부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나 이것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옥주 위원 해임 건의는 하실 거예요? 해임 건의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김진락 수사단장님 나오셨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임병헌 위원 좀 나오십시오.

오전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문……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것은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위반된다고 보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보류를 지시한 이후에 이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그 전에. 처음 할 때 경찰에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께서 보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래서 보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첩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군사기밀이라기보다는 중대한 군기 위반입니다.

○임병헌 위원 항명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다음에 수사단장님, 그대로 문졌습니까.

포병11대대장과 포병7대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제가 수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일단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공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은 사단의 최고지휘관이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할 때 강물에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면 초래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7월 26일 날 사단장에 대한 진술조서가 1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평가하기는 제한이 되고 차후에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결국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은—박정훈 수사단장이지요—혐의자의 죄명, 범죄 사실 관련 기록, 증거물을 모두 경찰에 송부하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임병헌 위원 다음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임병헌 위원 사령관님께서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원인규명을 위해서 여건 보장을 충분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재한 의미는 그것을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때 보고를 받을 때 문제가 있다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당연히 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드셨고, 또 지시도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결재 과정에서 사단장 포함된 것, 여단장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결제한 이후에는 유가족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령관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도 함께 보고하셨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7월 30일 날 오전에 해군참모총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해군참모총장이 결과를 받고 우려를 표시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데 대해서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총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군 내에서 혐의를 단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령관께서는 수사단장이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 관련해 장관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령관께서는 이첩보류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7월 31일 날 장관님 유선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관으로부터는 받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차관으로부터는 장관님 해외 출국하시고 17시 30분 경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령관께서 차관에게 받은 문자라며 그 내용을 수사단장 앞에서 읽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왜 수사단장은 그런 주장을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의 어떠한 다른……제가 문자를 보는 것을 보고 아마 착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령관께서는 차관으로부터 문자가 아닌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전달받은 사실 없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 핸드폰을 이미 다 검찰단에 제출해서 통화기록까지 모두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령관께서는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7월 31일 날 16시경 자체 회의를 할 때 일차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다음 날 16시 30분경 자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 지시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뒤늦은 지시에 대해 전 수사단장이 부당한 압력을 느끼고 이첩을 보류했다가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전 수사단장 측에서 고소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헌 위원 잘 판단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서 또 유가족과 사건 관계인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해병대도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총리께서 의무경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가 다시 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안규백 위원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이기식 예.

○안규백 위원 작년에 장병들이 입영, 현역 판정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작년에 83.6%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가장 높아도 91.5%를 넘지 않지 않았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것까지 갈 수가 없습

니다.

○안규백 위원 2013년도에 91.5%까지……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때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안규백 위원 청장님 오시기 전예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안규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비병력이 우리가 50만을 봤을 때 통상 24만에서 26만 정도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이 많이 게서 가지고 한 발 물러섰던데 혹시 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안규백 위원 다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장관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도 패싱을 하고 한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속담에 ‘피를 써도 죽을 피만 쓴다’는 말이 있어요, 살 피를 써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앞에 좀 앉으실 수 있는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조금 전에 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령관님이 차관으로부터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박 대령은 ‘사령관이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 줬다’, 그 내용의 취지는 ‘왜 해병대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히……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들었지만……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리 검토를 하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사령관 이걸 고민된다 어쩐다 이런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갔다는 정황 증거가 진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장군, 참모들하고 다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없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하고 둘이 있을 때 혹시 그것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나 이런 걸 보여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뭐 연극 연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많은 의혹이 있어서 검찰단에 제 핸드폰 2개를 다 제출을 했고 통화기록까지 해서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께서 해외 출타할 때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에게 8월 1일 날 그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한 것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차관한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차관으로부터 ‘조사본부로 이관하여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거기 서서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차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없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라’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차관으로부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검토 결과를 차관이나 사령관에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마이크를 쓰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요. 아, 중단시켰네.

○**위원장 한기호** 계속 해 보세요.

○**안규백 위원** 감사합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나는 리바이벌 앓는 사람인데.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죄송합니다.

○**안규백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이나 주장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가 사실 보더라도 수사단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외압을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사령관, 총장, 장관한테 대면보고해서 결재를 득한 점 그리고 지휘계선에 없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의 서류 제출 요구 또 내용 수정 요구, 이첩보류 요구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해서 건의를 거부당한 점 또 이관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 우려했던 점 이런 점이라고 보는데 사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전화는 장관님께서 법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을 조언하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조언을 받았던 사항들은 우리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결과는 혐의를 단정 지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자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 사령관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3회 받았습시다.

○**안규백 위원** 최고지휘관으로서 수사기관마저 무차별적으로 사령관을 수사한 것에 대해서 해병대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던데 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지시와 명령관계

에 있어서 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해병대의 최고지휘관께서 검찰 조사를 몇 번씩 받고 그랬는데도 ‘그것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지시명령권자로서 당연히 제가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안규백 위원** 일련의 해병대의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조직이 나를 지켜 주지 않는데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군인이 당당하게 그 조직을 믿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지,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직이 나를 지켜 주지 않는데 내가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해병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호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조직이 나를,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도 조직이 나를 지켜 주지 않는데 어느 대원과 장교가 그것 믿고 행동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번 이첩보류 지시와 충성과 결부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글썄, 사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고지휘관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빼고 보텔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가 또 군사경찰이 군심을 좀 달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강제수사 아니고 임의제출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저희들도 똑같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해병대 대원들, 해병대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리 사령관이 흔들리고 세칭 젊은 사람 하는 얘기로 쪽팔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상당히 군심이 흔들릴 것 아니에요? 그것 제가 보기는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조사본부 수사단장님 앞으로……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카톡이나 이런 내용이 사단장 지시로 전파로 하달이 됐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할 때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했는데 사단장에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예하부대까지 하달이 됐는데 실제 사단장이 그것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단장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단장 자체를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위원님, 오전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날 사단장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일련의 안전조치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예하 말단 제대까지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카톡 내용이 하달이 됐는데 그 카톡 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사실 사단장을 조사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도인데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이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진들이 다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진술 중 내용이 이 중령의 기억에 따르면 최 중령이 지휘통제본부 회의에서 사단장의 지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파했고 그때 중대장 사오 명, 주임원사 3명에서 4명도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언론보도 자료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수사단장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대대장 2명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진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변호인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대대장이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서 아마 나중에 차후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에게 제공을 했고 변호인이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배진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수사를 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사지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단이 각 대대에서 대대장들하고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캡처했던 사진을 조사 내용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 그러면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님도 수사단장이 보고하러 왔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령관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 입장에서, 사령관님 입장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이 이렇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물어봤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물어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수사단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군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혐의, 혐의자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최종 경찰에서 그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혐의가, 그러니까 혐의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최종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을 보장했던 것이고 그대로 그 조사결과를 수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장관님이 유선 지시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수사단장이 지금 이첩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군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수시 변경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국방부에서 분명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부여를 받은 것이고 군은 당연히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사령관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사령관 입장에서 제 직속 부하, 사단장·여단장,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에 기재가 되고 경찰에 이첩이 된다고 하는데 수사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수긍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희 해병 수사단에서의 어떤 조사결과가 혐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을 포함해서 경찰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사단에서 정확하게 단장 책임하에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이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사를 한 것이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조사된 내용만 보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경찰에 조사 내용만 보고하는 거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사를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에서 했던 것은 기초조사 수준이고 국방부에서 판단을 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알겠습니다.

사단장 얘기 좀 해 볼게요. 사단장이 17일 날, 실제로 지휘체계에도 없는 사단장이 이틀 전인 17일에도 갔고 하루 전인, 그러니까 사령관님과 장관님이 19일 날 방문한다고 하니까 지휘체계에도 없는 사단장이 17일 날도 갔고 그다음 18일 날 또 갔어요. 지휘책임자도 아닌 사단장은 왜 그 현장을 갔을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1사단 7여단 신속기동부대가 거기 갔던 건 50사단의 작전통제를 받아서 가신 것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 특정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단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단장이 갔던 겁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사단장은 가서 뭘 지시했을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사단장이 지시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그날 가서 이렇게 지시한 것이지요.

자, 국방부장관께 보고하러 가셨고 가서서 보고가 끝난 후에 사령관님과 장관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눴어요,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 관련해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령관님이 지금 대대장과 관련해서 인사조치 권한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대대장에 대해서는 사단장이 있고 사령관은 여단장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진교 위원 그래서 지금 대대장과 관련해서 직위, 인사조치한 것은 사령관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단장이 하신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이유는 분리를 시키는데 해병대 1사단에 두는 게 아니라 사령부 직할부대인 교육훈련단하고 군수지원단에 하다 보니까 사령부 차원에서 필요했고 처음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서 총괄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고 나서 대대장뿐만 아니라 사단장, 보고한 이 혐의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관에게 사단장과 관련된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서서 나오면서 사단장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보세요.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 수사한,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령관도 질문하지 않았고, 다만 혐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시고 사령관이 용인해 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께 보고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단장이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배진교 위원 제가 장관께 질문드리는데는 이미 사령관께서는 대대장과 관련된 인사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조사상에서 이첩되는 두 분, 사단장·여단장과 관련된 인사조치가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넘겨줄 경우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하고 사령관하고…… 사령관께서 장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치 문제 관련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것은 7월 29일 토요일 날 저녁에 사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진교 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그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단장이 이번의 역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사단장에 대한 저것은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관님께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랬더니 장관께서는 어떤 답을 하셨나요?

○위원장 한기호 배 위원님, 다음에 또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금촌 사람이에요, 파주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해병대가 제 고향 금촌에서 부대를 작성하고 여기까지 명예를 만들어 왔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에서 많은 해병대 전우가 돌아가셨지요. 사천강 전투에서도 766명이 죽었어요. 그런 죽음으로 지금까지 해병대의 명예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해병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 명예가 다 떨어졌어요.

사령관님, 7월 28일 결재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재 아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 결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결과 요약이요, 요약의 결론입니다, ‘사단장의 작전 지도상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이 내용을 다 보고 결재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할 경찰 이관 예정임’, 결재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결재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사항이라 우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충분한 여건을 보강했고 그 조사결과를 제가 결재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해병대 총책임자인 사령관이 결재를 한 게 이게 허당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장관에 의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것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해병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최종 결론은 민간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희들이 했던 것은 기초조사에 불과합니다.

○윤후덕 위원 기초조사를 결재했다는 얘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더 만들 거예요?

아니, 지금 오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수색작전의 작전권이 50사단장이었기 때문에 해병 1사단장은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장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 사단장 지시가 있었어요. 맞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앞으로 향후 조사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구명조끼나 로프, 장화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안전을 위한 장비지요. 이것은 50사단장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병 1사단장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장화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작전에 들어가는데 구명조끼, 로프 등등에 대해서 사단장이 이것을 준비하고 지시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50사단이 준비하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사단장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결과가 또 별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2명의 대대장이, 그중의 한 분인지 두 분인지 허리까지 들어가는 수색에 대해서 윗선의 승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어 봤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언론에 나온 것 봤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윗선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대대장의 윗선은 누구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대대장의 위는 현장에 있는 여단장이 될 수 있고 사단장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수사단장 대령하고 마지막에 협의할 때 그렇게 되면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기자라는 의논을 좀 했었어요, 사령관님하고

박 대령하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전 수사단장이 그것을 건의해서 제가 국방부차관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수사단장 대령하고 사령관님하고 들어서 의논하면서 차라리 국방부 수사본부로 넘기자라는 의논을 해서 사령관이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우리 해병대 자체 전체회의에서 그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난 것이고 그것을 제가 국방부차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때 답이 뭐가 왔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차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저한테 답을 줬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는데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고요, 차관이.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잘 검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저한테 답을 줬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냥 계속 검토만 하겠다, 검토만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차관하고 통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거기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윤후덕 위원** 제가 이제 질문을 장관님께 해야 되지요.

당일에 그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구명조끼나 로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당사자, 책임자는 50사단장입니까, 해병 1사단장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아까 해병대사령관이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어떤 작전통제 범위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병대 1사단장이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두리뎡실 얘기하지 마세요. 2년 전에 공군의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셨잖아요. 그게 군 안에서, 국방부 안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게, 수사하는 게 은폐·축소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군사법원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은 7월 30일 장관이 최초 결재한 것하고 8월 10일 국방부에서 결재한 것하고의 사이에 2명이 빠지고 4명이 범 죄행위가 없어지고 그런 축소·은폐화된 결론을 냈어요.

잠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군하고 국방부에서 불과 열하루 만에 축소·은폐한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이에서 드라마를 벌인 거예요, 드라마를. 영화를 찍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열흘 동안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군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방부를 상실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축소가 아닙니다. 축소 아니고요.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조사한 것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재검토한 것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단계가 아니고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격적인 수사는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애초에 경찰에다가 넘겼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데 위원님, 사망사고가 나면 모든……

○윤후덕 위원 경찰이라도 신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게 사망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다 경찰로 넘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찰로 이첩할 것인가, 군에서 종결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동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변사사건 조사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작극을 낸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

임질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자꾸 자작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확하게 개정된 군사법원법……

○윤후덕 위원 아니, 외압이라는 것을 부인하니까 자작극일 수밖에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외압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호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군에서 해병대가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 셋 단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질책당하고 하는 것 보니까 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 사령관님, 해병대 슬로건이 뭐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호국충성 해병대’입니다.

○정성호 위원 국가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사실이 사건 처리 과정이? 전혀 이게 해병대답지도 않고 군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장관께서 자꾸 이런저런 말 하시는데 그냥 넘겼으면 끝,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령관을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많이 의논도 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지금 따로 다른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냥 정부를 갖다가 또 해병대, 본인이 몸담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해병대를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명했겠습니까?

박 수사단장이 항명했다고 생각해요? 사령관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사

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긴 겁니다.

○정성호 위원 어떤 게 정당한 지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군에서……

장관님, 어쨌든 군사법원법 개정된 이후에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장관이 직접 해당 부대장하고 수사단장으로부터 대면보고받은 사건, 이게 유일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유일한 것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물론 국민적 이목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사령관도 거기 배석했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그대로 처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장관이 몇 번씩, 차관도 얘기하고 법무관리관 얘기하면서 이첩을 갖다가 보류하면서 이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장관 말마따나 거기에 혐의 자료가 어떻게 쓰여 있든 간에 넘겼으면 거기서 경찰이 혐의 있으면 혐의 있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처음 의도대로 이것이 사단장하고 여단장 빼고 나머지 대대장들 혐의 있는 걸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일선 실무자들, 하급 지휘관들도 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장관 스스로가 이게 기속력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령관, 7월 30일 날 수사단장하고 장관 대면보고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날 사실 알기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것을 차관이 무슨 중간결재니 어쩌니 이상한 얘기하는데 말이 되겠어요? 거기 중간결재라고 써 있습니까? 그게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최종적인 것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랬는데 그게 그다음 날 와 가

지고 사령관한테 이첩보류하라고 지시하고 또 지시하고, 또 차관도 전화 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그날 오후에 지금 발표에 의하면 사령관이 참모 회의에서 이첩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그랬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날 장관이 또 지시하고 차관이 또 얘기하고 또 그래서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수사단장이 ‘채 상병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받은 것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성호 위원 구두로 보고받았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정성호 위원 이 내용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정성호 위원 이 서면은 보고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구두 보고든 서면 보고든 간에.

여기서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족의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세 번째, 상급제대의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 될 때 더 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본 사건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 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수사단장이 정말 똑똑한 친구야. 분명히 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정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수사단장이 예상
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반대로 ‘이 상황을 갖고
수사단장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또
장관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저는 지금 말
씀하신 이야기 들어 보면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
지 않았는데 왜 수사단장이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그게 의아합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럴 우
려를,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 아니예요, 이 사람
이. 군사법경찰만 오랫동안 종사해 왔을 것이고
많은 그간의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해 봤
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넘기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요.

사령관, 이 얘기 들었었지요? 특히 더군다나
네 번째, 이게 군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확
정되는 게 아니니까 넘겨도 아무 문제없다 이러
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랬으면 끝날 문제
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자꾸 뒤집어엮고 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저는 그 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고 그건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자꾸 이 박정훈
수사단장 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 희생양 삼아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인 싸움을 계속 장관하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게 항명죄가 되지 않습
니다. 왜냐?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
에. 전 과정이 다 법률 위반이에요. 관련 법률 다 위
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
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
피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항명죄로 이것 수사해 갖고 기소한다고
하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해병대가 다시
구설에 오를 것이고 군의 사기가 떨어질 건지 그
런 게 걱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군에서 일단 항명으로 입건했다고 한
것이니까 장관이 냉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게 계속 문제될 거예요.
다음, 그다음에, 다음 정권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
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자기 생각과 다르
다고 해서 상급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군
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법을 어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군이 법과 원칙
에 의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법을 어긴 명령이 아닙니
다. 정당한 명령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법률 규정은 이건 이
사람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장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법을 판단한 게 아니
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당한 지시입니
다.

○정성호 위원 이게 장관의 지휘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법률 규정에 분명히 사
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넘기게 돼 있단 말
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넘기는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혐의를 확인을 해야, 있어야만 넘기는 겁니
다. 없으면 넘기지 않는 겁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그건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혐의라는 말도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왜
지체 없이 이첩하라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습니다. 최소한……

○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혐의를 넣어라 마라
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최소한 혐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경찰로 넘기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호 위원 아니, 이게 그렇지 않지요. 혐의
가 있든 없든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넘기라는 거
예요. 그게 이 법의 취지인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면 사망사고 전부 다
경찰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에
서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사건은 다 경찰로 이
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성호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
다. 지금 법 개정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정성호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야 되

는데 사실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권한이 군에 없단니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혐의가 없으면 넘길 수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혐의가 없으면 경찰로 안 넘깁니다.

○정성호 위원 그게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게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돼 갖고서 사실은 군 의문사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한기호 잠깐 좀 쉬셨다가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고 따지시지요.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 어제 위성도 쏘고 그것 질문하기 전에 법무관리관 잠깐 나와 주세요.

경찰에 이첩하는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사망사고 있잖아요. 단순 변사는 경찰에 이첩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안 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가다가 갑자기 단순 변사가 되면 안 넘기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때 넘기는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인지했을 때……

○신원식 위원 단순 변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초동 조사가 불가피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직 군사법원법상 변사 사건에 대한 관할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넘기는 것입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법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안타까운 해병대 순직병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어제 위성 발사가 있었고 북한이 지금 고도로 미사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라도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해병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

가 이것을 묻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 발사 어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7월 12일 날 화성-18형 2차 발사 성공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 뒤로 국방위가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따져 못 물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니다.

한 달 반쯤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군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북한은 그대로 모든 게 자기들이 성공했다, 최대 사거리 발사 결과 기술적 신뢰성, 운영의 믿음성 재확인됐고 성공했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한의 큰소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에서 북한의 ICBM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일단 ICBM으로서 비행거리,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기술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미사일의 장사정, 사거리는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재진입 및 정확도는 아직 퀘스천 마크고 세 번째가 적응성, 군사적으로 유용하나 이게 고체연료인데……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는 확실히 완성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2개도,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위원 두 번째 정확도에 대한 재진입은 아직 평가가 유보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사적 효용성은……

○신원식 위원 세 번째 적응성이, 고체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적응성은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착착 이렇게 진전을 굉장히 놀랍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전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도 그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어쨌든 진짜 그대로 재진입 기술만 하나 남겨 놓고 나머지는 신뢰성 있게 거의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미사일 개발된 게 최근에 보도 같은 것 보면 해킹을 했다, 심지어 러시아 것도 해킹을 했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공인된 건 없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어떤 조력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의심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번에 한미일 우리가 하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계속 사이버에 대해서 공조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각별하게 하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조달뿐만 아니고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해킹 가능성과 북·중·러 삼국의 협력구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또 순항미사일을 7월 22일 날, 그러니까 화성-18형 2차 성공하고 난 10일 후에 또 쏘어요. 자기들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몇 발 쏘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1발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처음 발표는 여러 발 쏜 것처럼 돼 있던데 1발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1발입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주장했는데 합참에서는 함대함 미사일이다, 그다음에 북한은 명중 타격을 했다 했는데 합참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유보를 했는데 지금 이 분석은 변함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북한의 주장이 좀 과장된 거라이지요, 이 주장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들은 명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1발 쏘다 이것이지요, 1발?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PPT 3-4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쏘는 장면인데 통상 북한이 명중을 하면 타깃에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이 화면은 발사 장면만 보여 줬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래서 합참에서 발표한 대로 북한이 정말 명중 타격했다고 선전한 것이 과연 정말일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 어쨌든 군의 발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공개된 함이 661함인데 이것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선전을 했는데 이것은 합참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이 함정에 대한 평가는 1000t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위함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모양을 보면 약간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외부 모양이 많이 개조가 됐는데 스텔스 기능이 좀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림만 보면 위의 상부 노출된 것으로 봐서 스텔스 기능이 없는데 측면하고 이쪽은 있어서 소위 RCS, 레이더 이쪽은 기존 북한 함정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스텔스 기능이 여러 가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도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북한은 그런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빨리 물을 테니까 끝나고 대답해 주세요.

글로벌호크하고 셋별-4형 그다음에 리퍼하고 셋별-9형, 열병식 때 등장한 겁니다. 정확하게 북한이 글로벌호크나 리퍼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기술적 수준이 되는 건지, 혹시 장관님이 구체적인 기술 쪽 하기 뭐하면……

정부 공무원들 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무인기가 전력화되고 작전 배치가 되려면 일정 거리, 일정 기간 시험비행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충분한 시험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점 등등해서 또 감시·정찰할 수 있는 장비·능력 이런 부분도 아직 군사적으로 효용성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해병대 사령관님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옮길 수 없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단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군 차장도 안 보이는데.

이 시간은 좀 빠 주세요.

해군 차장은 어디 있나요?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여기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치가 야당 쪽에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어. 불리한 위치에 앉아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쪽 보이게? 예를 들어서 병무청장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안 보이고.

검찰단장은 어디 있지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군 검찰단장 안 왔어요?

○위원장 한기호 검찰단장님은 오전부터 안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장관님, 오후에 검찰단장 나오는 것 지시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따로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사유서를 낸 것처럼 검찰단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여야 합의되고 국민의 명령인데 장관님이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검찰단장이야말로 국민께 항명하는 것이지요. 여기 가장 키맨이 검찰단장과 해병대사령관, 장관님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양해를 구한 것이 수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래 갖고 어떻게 국민의 의혹을 풀니까? 검찰단장은 수사 대상도 아닌데……

○위원장 한기호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른 데서 따져 보시고 여기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것은 이미 검찰단장이 참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권리로서 한 겁니다. 그것을 여야 합의했다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국정감사하고 또 다릅니다. 국정감사 때는 증인 채택해서 하면 그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반 상임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장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대단히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고 또 군 검찰단장도 군인인데 군인답지 못한 자세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넣어 주세요.

○위원장 한기호 하세요.

○김병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한기호 하십시오, 지금 시계가 돌아가는데.

○김병주 위원 안보실에서 7월 21일 금요일 날부터 초기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들이 보여요. 안보실에 해병대 김 모 대령 파견돼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령관하고 자주 통화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가끔씩 통화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직접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실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 모 대령이 21일 날 수사계획서를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고 있지요, 계획서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김병주 위원**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21일 날 얘기했었지요, 해병대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그 수사계획을 21일 날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제출받고요. 그때부터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엄정히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사본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것 모르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사항은 모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를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것과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 때문에 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얘기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7월 30일 날 장관님이 결재를 했었고 원래 언론 브리핑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이게 전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사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보실에서 왜 수사계획을 제출받고 조사본부가 하면 낫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요.

장관님, 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수사계획서를 안보실

에서 확인했다는 점은 처음 듣습니다.

○**김병주 위원** 처음 듣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국민적 의혹인데 다 조사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것 어디서 확인되신지 제가 모르는데……

○**김병주 위원**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보받은 사항을.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주 위원** 저는 제보를 받고 하는데 장관님은 이런 데 와서 그걸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포항지청으로부터 일반 검사, 포항지청으로부터 군에 빨리 이걸 이첩하라고 검찰 쪽으로 했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뭘 모릅니까?

법무관리관 나와 보세요, 그다음에 해군 차장이쪽으로 나와 보고요.

법무관리관님, 그것 얘기해 보세요. 포항지청에서 해군본부 군검찰로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제가 그때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드릴 때 포항지청에서 전화가 왔었고, 해군검찰단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첩되느냐, 이첩을 할 것이면 우리랑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통화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군 차장님, 포항지청 일반 검사들이 왜 군검사한테 전화왔습니까?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포항 쪽 검사가 일반 통상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것이고 통상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보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 전화 왔습니까, 해군본부로?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정확한 상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왔어요, 파악도 안 하고? 지금 해군의 사항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셨어요? 일반 검사, 검찰에서 외압이 있느냐는 의혹이 있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장관님, 그것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검찰에서 우리 해병대 수

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가 확인하니까 해군본부 군검찰로 전화를 했다고, 법무관리관도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반 검찰이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할 그런 관계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한 건지……

○**김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외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군본부 군검찰로 왜 일반 검찰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입니다.

변사사건 당시에 군검사가, 군과 일반 포항 측검사가 참석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변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외압의 정황들이 의심이 되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해병대사령관님, 1사단장을 언제 보직에서 배제를 시켰지요? 30일 장관 보고하기 전에 이미 해병 1사단장을 그 자리에서 업무 배제시켰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장관님 구두로 보고드린 이후에 7월 31일 날, 월요일 하루 분리시켰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31일 날 하루 분리시켰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김병주 위원** 30일 날 보고드리면서 해병대 1사단장 업무 배제시키면서 후임자 누구로 할 건지 장관님하고 토의하셨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은 현 1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해서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구두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장관님께 보고드렸는데 장관님이 결심을 못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저로서는 1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린 것이고, 보직 관련된 것은 사령관으로서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장관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

으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다가 아니더라고 했다가 또 시켰다가, 이것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번복이 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1사단장은 중요 부서장으로서 함부로 보직 해임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단장이나 대대장 같은……

○**김병주 위원** 그래서 누가 결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최초, 첫 번째 보직 해임이라고 누가 결심했고 그다음은 아니더라고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심했고 그다음은 맞다고 그건 누가 결심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보직 해임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분리에 대한 것은 사령관한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 분리시켰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라고 해서 화요일부터 임무 수행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직 해임시킨 걸로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김병주 위원** 아니, 앞에 분리는 사령관이 한 것이고, 하루, 31일 날……

○**국방부장관 이종섭** 보직 해임은 안 됐습니다, 그때.

○**김병주 위원** 지금 보직 해임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것이고 보직 해임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적이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없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보직 해임은 전 수사단장만 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보직을 분리시켰다가 원상시킨 겁니까? 하루만 보직을 분리시켰다가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31일 날 업무 배제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1사단장이 짐을 싸고 하루 휴가를 간 것 같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짐

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냥 하루 관사에서 그날 대기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며칠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31일 날.

○김병주 위원 31일 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 시켰다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보직 해임시키고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 번 반복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세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초에 분리를 시켰고 참모장 건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1시간 후에 다시 선보직해임을 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건 장관님 결재는 안 받았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권한은 해병대사령관한테 있기 때문에 제 권한으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장님, 군검사의 검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기호 예, 설명하십시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군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변사사건의 관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게 군검사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개선추진단으로 통보돼서 군검사한테 통보되고 그다음에 민간 경찰과 민간 관할 검사한테도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민간과 군 간에 상호 교류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도 잘못 알고 질의할 수 있지요.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조사하라고 말씀 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조사와 수사에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차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성이 좀 있고요. 혐의가 포착, 단서가 포착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기동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관리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사와 조사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지금까지 일련의 행위는 조사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아까 조사본부에서 나온 분 역시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행위는 예전에는 재조사라고 그랬다가 재검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지요?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재검토……

○기동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기관에 수임받은, 법으로 명령받은 이런 권한들을 축소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낮추려고 그러는지 정말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검토라느니 조사라느니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쭉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법원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수사에 무슨 조사라고…… 잠깐만요, 규정 읽어 봐 드릴까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무슨 조사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이 하는 일들이 무슨 여론조사기관입니까, 조사라고 읽게?

거기에 3조에 보면 상호협력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법무관리관 역시, 여러분들에 해석이 유

리한 건 적극적으로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명해야 될 것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된다. 2항에도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사 관련 기관 간 협조사항들을 법에 규정을 해놔고 여러분들이 판시한 규정에도 전부 다 담아놔던 거예요.

업무를 그렇게 격하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들을 폄하시키지는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군검사나 군사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3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을 제가 다 읽어 드린 것이라니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가 인지되면……

○기동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 3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가 읽어 드렸음에도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사·조사 그다음 인지통보서에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처리한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을 그렇게 허투루 행사하지 않았어요. 6개 사건 역시 당당한 수사 주체가 되어서 정당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했다고요. 그리 공조해 가며 수사를 해 왔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왜 이 건만 마치 별건 취급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의 신뢰성들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나 검토나 격하시키고 있나

고요. 맞지 않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법 조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지 마시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이게 법 개정할 때……

○기동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해병대사령관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나 하면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쫓진행한 사건을 해병대사령관 역시 수용했고 참모총장 역시 수용했고 장관 역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 주지 못한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사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수사하거나 보조할 수 없어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령관님 역시 수사단장의 보고를 듣고 일정한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걸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셨듯이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뒤집었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조사본부의 결과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놓은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해병대를 지켜 주지 못한, 명예를 실추시킨 가장 중심에 국방부장관이 계시고 해병대사령관이 계신 거예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질 삼류 정치인의 흉내를 낸 사람입니까? 사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분명한 것은 사령관은 군사경찰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수사단장이 사령관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사령관님도 수사단장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국방부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너에게 내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권남용이 됩니까’ 이런 조언들을 주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곧 스스로 이 과정 속에서 해병대사령관 역시 구체적인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장의 행위, 수사단의 행위, 수사기관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방증이라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 첩보류 지시에 대한 것은 지휘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명령이지 그것하고는……

○기동민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말을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입장을 통일한 것이지요. 이 법 해석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같이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이런 수사단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군사법원법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가, 6개 사건도 그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에서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정비 보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기동민 위원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자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덮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법문들을 들이대어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기동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해 보겠지만’이 아니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거라니까요? 규정과 시행령……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군사……

○기동민 위원 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고요.

○기동민 위원 명문화되어 나와 있는 대로 지금까지 잘 처리를 하다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기동민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법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바꾼 법이 한 1년 4개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전범들이 나와 있

어요. 6개 사건 정도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왜 유독 이번 사건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기호 충분히 장관님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건 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 입건 전 조사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초동조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법무관리관이 이 법 개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호 나중에 기동민 의원님실에 가서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외압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외압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었습니다.

○이채익 위원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채익 위원 저는 이 사건을 제가 공부하고 또 자료를 보면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문제가 확대된 것은 군사경찰, 즉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법원법 제45조 군사경찰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고 일방적으로 여러 자기 주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해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조사기록에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계속 흘리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절대 진실은 이제 거짓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야당 위원들의 강압적인 질문에 또 유도질문에 절대 원래 생각대로, 원래 있었던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국방위를 지원한 동기도 그렇지만 저는 최전방에서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3년 복무를 하면서 군은 충성이라고 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군은 지휘체계, 군기 이게 저는 확실히, 이게 안 된다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장관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병대’ 하면 우리 해병대 정신으로 얘기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귀신잡는 해병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해병은 역시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 국가를 사랑하는 혼이 다른 군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우월적인 자긍심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 동의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동의합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어떻게 헌병, 그러니까 해병대 대령, 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언동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박정훈 전 대장이 21일 날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해병대사령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부하에게 이런 소송을 당하면서 그 소회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는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직무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보직해임을 시킨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바가 없고 지시했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동의하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저는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제5조제1항에는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직무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만큼 그 직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령관에게 지휘감독권이 있고 수사단장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당연합니다.

○**이채익 위원** 해병대사령관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선으로 2회, 7월 31일, 8월 1일 또 7월 31일에 부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받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받았습니다.

○**이채익 위원** 7월 31일 오후 4시경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8월 3일 장관 해외출장 복귀 이후 조사 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이라는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을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리고 함께 들은 참모는 누구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부사령관 포함해서 장군 참모 그다음에 정책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등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이채익 위원** 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직접 했고 들은 참모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것은 군검찰 또 군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지시 불이행, 항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정당한 분명한 지시를 했고 항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 사건 부분은 경찰에서, 이 항명 부분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께서 우리가 지금 GDP가…… 경제성장 부분이 북한과는 차이가 많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갖던데 본 위원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핵이 지금 계속 개량화하고 과학화되면서 공격성을 계속 띠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이 살아야 할 것은, 또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은 군기라고 생각합니다, 군기. 정말 오늘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유재은 관리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 월요일 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사단장과는 다섯 번 통화를 했고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 해병대사령관과는 몇 번 통화를 했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두 번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첩이 일어난 후에 또 두 번 통화한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법무관리관께서는 이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두 번째 통화에서 사건인계서를 보냈다고 하고 그 사건인계서를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사건인계서를? 사건인계서가 8월 1일 9시 14분경이네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유재은 법

무관리관은 장관 결재한지도 모르고 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지통보서가 작성되는 이것도 된지도 모르고, 뭘 근거로 장관의 지시사항을 수사하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사령관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일단 그 전날 13시 30분 회의에서 장관님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원론적인 설명을 수사단장께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첫 번째 통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인지통보서가 작성되고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송갑석 위원** 같이 수사를 했었던 해병대 중수대장 박세진 중령 그다음에 최영만 수사지도관이 사람들은 8월 1일 날 오후 4시경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용,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한테 한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송갑석 위원** 이것을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화했고 이것에 대해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사실확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단장이 ‘직접적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외압처럼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니 법무관리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하여 수사단장이 ‘인계 서류 보셔서 알겠지만 그것 다 빼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관님의 명시적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되물었고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했다. 그다음에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장관 결재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런 내용 대화를 나눈 적 없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일단 저는 그 대화가 시작될 때 스피커폰인지는 몰랐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오전 중에 저한테 언성을 높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에 대해서 쪽 언성이 높았던 전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사

건 인계의 어떤 이첩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는 것을 쪽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송갑석 위원**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2명의 중령과 준위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만약……

○**송갑석 위원** 기억나지 않는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스피커폰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듣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송갑석 위원** 위법한 일이라고치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법한 일이라고치고, 제가 사건인계서를 항상 설명할 때 최초 취지부터 저희가 혐의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 특정도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축소하는 특정도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갑석 위원** 다시 묻습니다.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 제가 방금 불러 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저는 사건인계서 양식이 맞지 않다고……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이 길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남한테 지시하는 말투로 한 적이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 취지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 다 빼고—토씨 하나까지 똑같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비슷하게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비슷한 말은 최초 전화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 비슷한 말이 뭐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법무관리관! 월요일 날 수없이 질문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송갑석 위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했 다니까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반대 해석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냐라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송갑석 위원** 물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송갑석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죄명, 혐의 내용을 빼라 마라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말이 바뀌네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니요, 말이 바뀌게 없고 취지가 동일합니다.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한 것이네요. 이러니 내가 국방부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난 월요일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일.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이해하기로는……

○**송갑석 위원** 이해하지 마시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법무관리관이……

○**송갑석 위원** 됐어요, 됐어요.

사령관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지나서, 사십몇 초 남았네요.

사령관님, 총 몇 번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에서 ‘하지 마’ 그러면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첩보류 지시를 장관님으로부터 두 번, 부사령관이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또 법무관리관도 두 번

—이첩 후에 두 번, 이첩 전에 두 번이니까 두 번—차관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도대체 명령이 몇 번을 해병대사령관한테 이야기가 됩니까? 이런 적이 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명확한 것은 장관님께 명확히 제가 최초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하고 이런 것을 통화한 것은 장관님이 법적으로 조언을 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그 부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혐의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최초에 장관님께서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히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전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과의 어떠한 법률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갑석 위원** 이첩보류 지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월요일 날은 국방부 전체적으로 이첩보류 지시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첩보류 지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인 취지 이런 이야기들이 폭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첩보류 지시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명령을 장관이, 왜 장관께서 한 번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습니다. 장관께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왜 또 전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세 번 전했으면 됐지 이 간단한 일을 차관이 두 번, 법무관리관이 두 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제가……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차관이 ‘해병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간단한 일을, 어렵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 답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차관이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은 이첩보류 지시를……

○**송갑석 위원** 차관이 하는 일을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장담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똑같은 이첩보류 지시를 세 번, 네 번 하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이첩보류 지시는 처음에 사령관한테 전화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법무관리관 법리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사령관이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라’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첩보류가 되면 경찰이라든지 유가족분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도 잘해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것은 사령관이 ‘2일 날 이첩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다. 일단 내가 갈 때까지 보류해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3차 질의는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해병대사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병대에서는 대민지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냥 보통 보면 한 1년에 몇 건 정도 대민지원을 하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해병대에는 제2 신속기동부대가 있기 때문에 상시 출동을 나가고 인원은 한 1200~15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농사짓기나 추수 때가 되면 상시 대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양한 종류의 대민지원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지침과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 대민지원에 과연, 어쨌든 투입되는 군대와 관련돼서도 그 특성에 맞게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장병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중작전을 하지 않는 포병대대의 장병이 투입된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구명조끼와 안전줄도 없이 유속이 빠른 하천을 수색한다, 그동안 포병대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이나 이런 대민지원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송옥주 위원** 아니, 수사가 아니라 그동안 포병대대들이 이렇게 물과 관련된 대민지원, 수색작업에 관련해서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포병대대가 투입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업무라든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든지 유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랑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게 대민지원을 많이 다니면 매뉴얼이나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병대에도 각자 이렇게 포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분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기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사라고 다 모든 부분들에 능통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에 재난대응매뉴얼이 있고 그러한 대민지원간의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병사들이 얘기하는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 없었던 것 그리고 안전재난수칙에서 물속에서 수색을

할 때 장화 신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도 이게 사실은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서 지역에서도 혼란이 왔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수색을 지휘한 대대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병대사령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지휘선에서 이런 군인들의 대민지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구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 건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 제도 이런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병대에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흡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현재 지급 보완 중에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제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군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산복무지원금이고 하나는 단기복무장려금,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단기복무장려금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산복무지원금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현재 가산복무지원금은 대학교 등록금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게 결정되는데,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학등록금이 저렴한 경우에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거의 단기복무장려금 쪽으로 많이 쏠리고 가산복무지원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걸 제도개선해서 정책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서로 충돌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또 하나는 국방무관 성희룡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오만 국방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잘 알고 계시는데 민원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오만에 근무 중인 우리 국방무관이 수시로 현지 행정직원인 한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정보부에 알렸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다 조사를 했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혐의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방무관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는 만큼 국가의 위상,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제도 위원님들 많이 거론됐지만 ‘국방무관 자리에 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무관 중에도 발탁을 해서 훌륭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서 국방무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특별히 국방무관에 대해서는 진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국방무관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무관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의무경찰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의경은, 군 인력이 부족한데 의무경찰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사령관님,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사령관의 자의적 해석 아니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

닙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오늘 제가 사령관 답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생각해 온 내용의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가슴에서 나오는 답변하고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반면에 오늘 김진락 수사단장은 그 태도와 모습,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진심이 담겨집니다. 계속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예,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어제 K-11 소총과 관련해서 2심 결과가 나왔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채무 존재 확인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됐는데 방위사업청장은 이 기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이게 안 끝났으니까, 2심 결과가 나왔으니까 2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2심 판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상고심에서는 법리만 다를 뿐이지 사실관계는 다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업체와 방사청의 관계가 확정된 셈인데 지금 현재 판결 결과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아직까지 저희가 상고할지 안 할지를 지금 판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애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견된 패소 아니었습니까? 이미 19년도에 감사원에서 ‘국방규격에 오류가 있었고 방사청의 미흡한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청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부로서는 굉장히 소송비가 증가되고 또 방산업체에 가중된 면에서 우리 방산업체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국감 때마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가 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안규백 위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각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런데 그게 판결이……

○**안규백 위원** 지금 어디 계세요? 대전에 계세요, 과천에 계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지금 서울에 일정이 있을 때만 서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대전에 계시니까 그렇게 일차적인, 즉각적인 회의 소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 지금 MUAV, 중고도 무인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올해 양산 의사결정이 됐고 올해 연말까지 양산 계약을……

○**안규백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감사받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아닙니다. MUAV는 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끝났는데 ADD 연구원들이 지금 감사받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추가로 감사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5명에 대해서 감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빙제어가 지상에서 13km 이상 상공해 있을 때 에어가 결빙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왜 전기로 하지 유류로 하느냐, UAV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최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방식으로 ROC를 충족할 것이라고 연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규백 위원** 청장님, 이게 일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건데 이걸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야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튀르키예보다도 무인기 기술이 10년 이상 발달돼 있는데 이것 17년, 18년 또 연구원들을 격려를 못 하면, 계속 프레스를 주고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더 격려해 주고 부족하면 진화적 ROC를 더 해서 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건건이 R&D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 이번 UAV 사업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개발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속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은 항상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데 뭔가 R&D 연구에 저해되는 요소를 저감시키고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튀르키예보다도 10년 이상 앞서는 무인기 기술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저희 방위사업청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이 예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고, 일하다가 선의의 정책적인 결정과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밑의 사람들이 감사를 받으면 되겠냐, 요약은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산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장관은 동으로 서로 북으로 뛰어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지, 13km 위에서 이게 결빙이 되는데 전기는 되고 유류는 안 되고 하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감사하고 제지하고 조사하면 되겠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노력하시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를 하시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들은 복명 차원에서 통상 대면보고를 많이 합니다.

○배진교 위원 만약에 대통령의 대면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안보실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좌하는 측면에서? 안보실에는 주로 누가 가서 보고나 협의를 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안보실에는……

○배진교 위원 장관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배진교 위원 지시사항,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시사항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대면보고드리고……

○배진교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 안보실에서도 그 업무는 관여를 합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실에서도 국방부가 이 상황들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역할은 합니다.

○배진교 위원 협의를 누구랑 주로 해요? 장관님하고 해요 아니면 차관님하고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건 주로 정책 업무 같으면 정책실 또 전력 같으면 또 전력 대응되는, 해당되는 업무 관계관들하고 합니다.

○배진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날 해병대사령관 보

고받으시고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첩된 것에 대해서 이미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관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출국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항이 전 국민에게 통보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되고 해군참모총장에게도 보고되고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가 다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 수순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이렇게 진행해서 군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지요, 다음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이 경우는 대통령께 보고사안이 아닙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보고사안이 아니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엄정한 수사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장관의 구두지시도 항명죄에 해당하는 판에 군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인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배진교 위원 아니지요, 국방부장관까지 보고를 받았으면 장관이 안보실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수순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배진교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안보실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끝

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될 것이지 지금……

○**배진교 위원** 아니지요, 안보실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것 지시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대변인 브리핑으로 했어요, 이미. 그리고 대국민적으로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지요, 안보실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장관께 보고가 된 그 후에 안보실 2차장이 휴가가 끝나고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그것은 안보실의 임무예요. 왜?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장관이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까지 가기 전까지 이 과정에 누군가 가서 안보실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요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장관님 말고 해병대사령관님 생각하시기에 어떠냐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는 위원님의 나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면요, 안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언론 자료 봤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언론보도 자료만 확인하고 통상 언론에 설명하는 것들은 안보실에서 내용을 챙깁니다, 의무적으로.

○**배진교 위원** 아니, 안보실 관계자들이 계속 ‘수사와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수사단장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장관께 보고하는 그날 계속적으로 ‘안보실에서 지금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일 언론 브리핑할 자료만 그러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나왔던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 있는 해병

대의 ‘인원을 확인했다’라고 제가 여기서 듣고 휴식시간에 확인했는데, 통상적으로 해병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기 파견 나가 있는 해병대 장교들이 하나하나 다 무엇인지 내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개요 정도만 확인하는 그 차원이었고 언론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인원들이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해병대 같으면 해병대 사안이 언론에 무엇인가 설명이 되면 해병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인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아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수사원칙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보고될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아닙니다.

○**배진교 위원** 저는 장관님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안보실은 그러면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해태고. 안보실 입장에서는 현재 국방부장관께 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안보실도 문제고요, 만약에 요청을 안 했다고 하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엄정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를 두고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다 끝나야 되는 것이지요.

○**배진교 위원** 아니, 전 과정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군대 내에서 지금 1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 총장, 장관께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 결재를 다 맡은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요구 안 했으면 그것은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해태고.

그리고 당연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안보실에 가서 보고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장관이 안 갔으면 차관이든 실장이든 누군가가 가서 안보실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결재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기호** 됐습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 말씀은 대통령님 말씀이 당부사항이지 어떤 지시사항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입니다.

해병대사령관님, 제가 해병대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자꾸 답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며칠인가, 대령하고 사령관님하고 몇 사람이 회의를 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런 의견이 있었고 차관한테 건의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차관한테 전화로 ‘우리가 차라리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언제예요? 8월 1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8월 1일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8월 1일 몇 시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한 16시에서 17시 안 돼서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 여러분들이 의논한 것은 혐의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해병대가 수사를 한 게 은폐·축소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국방부조사본부로 보내자라는 그것을 차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차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차관한테……

○**윤후덕 위원** 그래서 차관이 답변이 왔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고 답변이 왔어요, 나중에 검토하고 나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나중에 문자를 통해…… 군사보좌관 문자를 통해서 ‘지금 답변이 왔는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님 복귀하신 이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돌아온 게, 그 문자가 몇 시경이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게 차관하고 통화하고 한 20~30분 이내에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 차관으로부터 이 시점에서 보고받고 의논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그때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 일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귀국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검토 자체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첩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윤후덕 위원** 해병대사령관께서 차관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을 차관이 장관께 그 시점에서 협의를 했냐고요. 보고도 안 한 것이지요? 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구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요,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인지 그 문제는 제가 갔다 와서, 바로 하루만 더 있으면 귀국하는 것이니까, 출장 중에 다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해서 결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나중에라도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왔잖아요. 그 시점에서 ‘넘겨라’ 이렇게만 했으면 이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겨라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귀국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급한 일들을 그때그때 판단을 해 줬으면 해병대가 이렇게 명예가 망가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 줬어도 이런 문제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첩을 시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관련해서 짧게 물으려고 하는데요.

김관진 국방장관 지난 8월 18일 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실행 선고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환송심이었기 때문에 그 전심인 대법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정치개입 혐의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었어요. 직권남용에 관해서만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판단해라 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그게 징역 2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가지고 법정구속은 면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상고도 했지만 이미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그 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 봤자 뻔한 겁니다. 그대로 상고 기각 날 게 분명한 건데.

문제는 이분께서 과거에 군에서는 좋은 군인으로 평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 확정을 사실상 받은 건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더군다나 또 장관 직속의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에 임명돼 있지요, 사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 사법체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사실은.

저는 정말 이런 면에서, 물론 대통령께서 이분을 신뢰하고 또 장관께서도 군인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정치개입 때문에 유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버린 건데, 직권남용 부분은 일부 무죄 때문에 지금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건 맞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라든지 경험이 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분이 다 결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위원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치개입 혐의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라니까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 선고할 때도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분이 부대원에게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개인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 그다

음에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게 했어야 됐는데도 직권을 남용한 것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이 점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댔느냐 하면, 국방 현안보고하면서 이번 을지훈련 과정에서 ‘사회 혼란 목적의 반국가 세력의 준동과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연습’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엄정하게……

내년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이 친윤모임에 가 가지고 ‘여당이 꼭 총선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군마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내년 총선에서 또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게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게 좀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 잘 이해했고, 다만 연습 상황은 실제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상정해서 가능하면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전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시 상황이 되면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장관님의 말씀을 다 믿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 혼란 목적의 반국가 세력 준동과 여기에 대한 대응 연습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전시 사정을 가정해 뒀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다만 군에서 관련 부대, 이런 일들을 평상시에 어쨌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김관진 장관 사건처럼 댓글부대 해 가지고 그렇게 전직 별 넷까지 다시고 장관까지 지낸 분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각별히 유념하고 또 어제 원희룡 장관 발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장관이, 군인들이, 군 지휘관들이 엉뚱하게 이런 정치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유념해 달라 이런 당부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해병대 순직 병사 관련돼서 안 하려다가 한번 다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찰로 과실치사가 됐든 어쨌든 순직 상병에 대한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원인은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조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항명 분야는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게임입니다, 누가 사실인가. 그것은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사령관께서도……

해병대사령관님, 공식적인 지시는 주로 참모회의를 통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 들었을 테니까, 지금 ‘이첩할 때까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해병대사령관님이 그런 지시도 안 해 놓고 항명으로 억지로 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리하니까 그런 지시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밝혀지겠지요. 그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님, 안 그러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미 그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인 포함해서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고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각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특정 호오나 신념 때문에 박대령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박대령이 한 이야기는 다 맞고 그다음에 장관님이나 해병대사령관님이 한 이야기는 틀린 것으로 가정을 해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봤자 의미가 없고 결국 저는 조사와 수사, 나중에 1심·2심·3심 가면 재판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은 여태까지 군에 일어난 사건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보면 군 내는 법리…… 처음에 군에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론에서 들끓고 난리가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상 군에서는 자체조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할 때는 법리에 기초를 하게 되고, 그 법리도 민간법보다 군법은 군의 지휘계통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특수성 때문에 좀 결이 다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래서 통상 군에서 조사해 가면 정치권에서 그것 가지고 국민 마음을 달랠 수 있느냐 해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해요. 심지어 총장까지도,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육군총장까지도 책임지고 벗었어요. 그래서 이게 늘 안타까웠어. 아마 그것은 군생활한 사람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재판이 됩니다, 여론재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군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했다, 밖에서 해병대 속죄양을 원한다’ 그래서 아니 8명을, 8명을 이렇게 몽땅 다 보직해임 이런 것도 정말 과도한데 이것은 과실치사예요.

아니, 안타깝지만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툭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제가 창군 이래 8명을 이렇게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싸그리, 그것도 보직해임도 안 해요.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죄명을 씌운 예가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에서는 법리와 군 작전 특수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더 처벌해라 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또 난리가 나서 결국 총장이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장관님이 지금 하신 것은, 우리 장병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을 보호하는 겁니다. 과도한 언론과 과도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지 않도록 장병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런 용기를 내서 해병대사령관하고……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보호 안 하고 그냥 넘겨 버리면 이렇게 불러 나올 일도 없어요. 왜 직을 걸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그게 관례화가 되면 앞으로 누가 작전을 합니까? 군사작전을 어떻게 하고 대민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 위험천만한 일을 군인이 주로 하는데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다 보직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군대 임무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이야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장병들은 지금 장관님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와서 저런 장관님 없었어요. 다 밖에서 여론 되면 대충 해서 법리가 아니고 여론재판을 했어요. 여론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국민 비난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당시 일시적이고 이상적인 여론 이런 게 무서워서 그것을 당당하게 설명해서 법리에 맞도록 설명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복귀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여론이나 잘못된 속죄양을 찾을 때 담담하고 끝까지 원칙에 입각해서 설득시키는 노력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장관님 이번에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의 용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은 집단항명의 어마어마 무리한 죄를 했다가 무죄로 2명은 입건을 풀어 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도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특히 검찰단장 오늘 출석했으면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공평해야 되는데 선별적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령관님, 7월 30일 날 그날 안보실에서 장관 보고서 보내라 했는데 전 수사단장이 거절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날 저녁 한 6시경에 사령관님이 수사단장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얘기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 안보실로 보내라는 지시를 사령관님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안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 김 대령이,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해서 그것 보내 주라고 제가 수사단장한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안보실에 있는 김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령관님은 전 수사단장한테 지시했다는 거네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문자 받고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문자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김병주 위원 뭐라고 문자가 왔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브리핑 자료 보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 수사단장한테 ‘브리핑 자료를 보내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은 문제없다’ 그래서 그걸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첩보류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이첩보류 지시는 최초 7월 31일 11시 56분에 장관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지시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라고 지시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언론 브리핑, 국회 설명, 이첩 관련된 부분 모두 홀딩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홀딩하라는 배경 설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것은 차후에 부사령관이 가서 장관님께 지시받고 와서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부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장관은 떳떳하지 않으니까, 유선으로 전화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걸릴

수가 있지요, 뭘 빼고 뭘 더하랴. 그러니까 부사령관 불러서 얘기하고 그것 한번 보고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이첩보류 지시 정확히 언제 전 수사단장한테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 날 일차적으로 자체 회의 때 했고 최종 한 것은 8월 1일 16시 한 30분경에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8월 1일 날 전 수사단장은 건의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국방부 시킨 대로 은폐·축소하고 보류하고 하면…… 건의하잖아요,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에 걸리고 또 유가족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님과 해병대를 위해서는 이첩해야 된다고 건의하잖아요. 건의받으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건의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단순히 이첩보류라면 왜 건의했겠습니까? 거기에 축소·은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했지요. 그때 뭐라고 지시했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축소·은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장관님께서 부사령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것은, 법리적인 검토는 전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하고 논의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줬던 것이고 법무관리관하고의 최종 의견이 되고 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 수사단장이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미 최초로 장관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은 충분히 추정된 과정으로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전 수사단장하고 법무관리관하고의 어떤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줬던 것이고 최종 결심은 그래서 8월 1일 16시 30분경에 제가 이첩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인 검토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하고 또는 혐의 사실은 넣고 빼고가 법리적인 검토잖아요. 보류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는 축소, 은폐, 보류 또는 누구는 빼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건의를 한 것이고 사령관도 그 당시 고민을 했던 것이지

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것 조사본부에 넘겨서 우리 발뺌합시다, 괜히 우리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느냐까지 전 수사단장하고 사령관은 의견 일치를 본 것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건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왜 조사본부에 넘겨서 하겠다고 차관한테 건의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수사단장이 명확히 개입을 하게 되면 사령관도 권력남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국방부 차관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사령관의 직권남용 이런 것은 보류를, 며칠 연기하는 것이야 전 수사단장도 당연히 듣지요. 그걸 왜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유가족이 보류 며칠 한다고 왜 거절, 거부,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거기에 수사 원래 8명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하고 혐의사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냥 하세요.

○김병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한기호 질의할 게 있으면 더 해 보세요.

○김병주 위원 시간을 줘야 되지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그러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김병주 위원 아니, 사령관님이 답변, 장관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사령관님 설명해 보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위원님, 저는 제가 7월 28일 결재할 때도 분명히 수사단의 여건 보장을 했고 그다음에 결재했던 것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일 날 자체적으로 토의했을 때도 충분히 참모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어떤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졌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군인한테는 명시된 과업이 있고 추정된 과업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이첩보류 지시는 명확하게 명시된 지시였고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이 논의하라고 했던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이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은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저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님까지 명시적으로 수사결과에 대해서 장병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장구를 치시는 걸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말씀을 애둘러 말씀 주신 것이거든요.

장관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수사한 게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그건 장관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쪽 진행한 과정들이 왜 수사의 단초가 되어지고 수사행위였는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은 다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입건 전 조사를 한 겁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은 너무 편의적이세요. 필요한 부분들만 갖다 붙여서 말씀을 주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동민 위원** 지금까지 쪽 군 내에서 진행되었

던, 군검찰과 그다음에 군사법경찰관들이 진행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지시와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사건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뒤집었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신원식 위원님께서 과도한 처벌이었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장관님께서 바로잡으셨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장 경계했던 부분들이라고요.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 3대 사건, 성범죄 관련 그다음에 사망사건 그리고 입대 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인지되는 순간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넘긴 그 법 개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해 버린 걸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여당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들이 없어야 돼서 보류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첩보류뿐만이 아니라 이첩보류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여러분의 언어로 보면 재검토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결과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구체적인 수사개입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조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거기 일조하셨다, 바로잡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왜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장관께서 유지해 왔던 스탠스에 근거한다면 신원식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주셨더라도 장관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적으로 장관이 역할을 하셔서 부당한 처벌, 과도한 적용 이것에 대해서 막았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건 국민적 오해를 증폭시키기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세요.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실토하신 것하고 똑같다고요.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아닌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최종 결과는 경찰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제가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인정하고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하는 것이지 어느 분이 질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인정하고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아니, 좀 전에 분명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국방부장관이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 2명에 그치고 책임 지을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운 것이다, 나머지는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군 내에서 이루어졌던 범죄행위가 너무 과도하게 여론의 입김에 휩쓸렸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군 내에서의 그런 과도한 법 적용에 대해서 장관이 역할을 해서 이걸 막아 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고 거기에 진폭적으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기동민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끝에 제가 별도 답변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속기록을 읽어 보면 뻔히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도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한기호 예, 그러십시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장관님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금방 했던 얘기까지 그렇게 부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기호 다음에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이종섭 장관님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의 답변이 일관되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계속 시종일관 논리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방금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앞뒤 말이 다르다는데 그런 일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 기억은 제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오늘 지금 언론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영웅으로 비화 또 칭송되고 있는 정율성 씨 부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정율성의 미화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광주광역시와 중국 해방군가와 북한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1976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마는—기리기 위한 역사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세금 4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남 화순군은 2019년에 정율성 고향집을 12억 원을 들여 복원하였고 이곳에 전시된 사진에는 ‘정율성이 향미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고 버젓이 설명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남 화순의 능주초등학교 4층 건물 외벽에는, 지금 저 그림이 나옵시다만 정율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특정인을 기리는 역사공원이나 동상 설치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단순한 공간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과 미래 세대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은 다 알다시피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공식 군가처럼 불리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자입니다. 6·25전쟁으로 우리 군은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 희생되었는데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위훈 활동을 벌이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역사공원과 동상을 세우고 초등학교 외벽에는 초상화를 그려 기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을 한 인사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병대원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는 광주 현충탑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재정비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호남 출신 독립운동가가 2600명, 6·25 때 전사한 호남 출신 학도병이 700명, 호남 출신 전사자 수는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제 나서서 광주시와 전남 화순군 그리고 교육부에 재검토와 조사를 요구하고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도 국방부의 역할 또 군의 사기 진작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군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할 것은 하고 또 관련된 조치는 할 것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채익 위원 국방부장관께서는 교육부하고 관련 부처에 꼭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 정서에…… 참으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채익 국방위원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느냐’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 시민들의 절규를 꼭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송갑석 위원 사령관님,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병대 병사가 군의 명령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스스로 수사본부를 꾸려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전례 없이 사단장, 여단장부터 시작해서 죄를 묻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를 내놨습니다. 읍참마속이겠지

요, 해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모든 결재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 해병대령은 직위해제되고 항명죄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은 살아나고 일선 대대장 2명은 이제 꼼짝없이 죄를 받게 생겼습니다. 해병이 분열되고 있지요.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의 진실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해병 정신은 어디 갔냐고 공공연하게 해병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국방부 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인지 수사결과를 조사본부로 이첩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여다볼 것 있으면 상급 부대에서 들여다봐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분, 30분도 안 돼서 수용 불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대변인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8월 10일 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3월 8일 이후 검토 준비했으나 2일에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시켜 그 이후 준비나 논의가 무의미하다. 조사본부로 넘기는 것을 반려한 사실은 없다’. 20분 만에 차관이 수용 불가 문자 보내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반려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해병대 너희들의 손으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너네들 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너희들의 손으로 왜곡하고 축소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원본이 올라오지 말아라’ 이것을 국방부에서 해병대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손으로 고쳐라, 애초에 흔적을 없애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해병을 조롱하고 비웃고 세상에 이런 항명은 없었다……

해병대사령관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요 항명 문제 아닙니다. 항명 문제 아닙니다. 온 국방부가 나서서 해병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보입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사단장, 여단장 빠져나간 그 건 말고요. 결국 이것은 부당한 수사개입 사건이 이제는 돼 버렸습니다. 댔고 거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수사

단장 항명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법무관리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데 혼자 오버해서, 두 명을 타깃으로 잡고 조용히 덮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법무관리관한테 일말의 동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렇게 법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시켰든 안 시켰든 간에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관련된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오직 법무관리관 한 명의 오버로, 잘못된 판단으로 장관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어서 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제 상황이 너무나 험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좀 여쭙볼 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번 1차 우주발사체 인양을 해서 재료부터 전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쳤습니까, 아직 못 마쳤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1차 분석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분석이 돼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열릴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다음, 이번에 훈련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상황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 설정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박 상황까지 하려면 우리의 훈련 요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사일을 쏘는 게 임박 상황이니까 미사일에 핵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훈련에 핵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투발 상황을 안 하고 임박 상황까지만 상황 설정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문제는 투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별도로 한 측만, 그런 상황까지는 상세히 해서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다음 연합연습할 때는 핵 공격 상황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 핵 미사일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실시간 정밀 분석해서 이 미사일은 핵 미사일이다, 이걸 아니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설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재래식 요격 시스템으로 적의 핵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분야를 정밀하게 많은 두뇌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I를 적용한 정확한 판단,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다음에 오늘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첩 서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첩 서류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지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첩 서류 양식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첩 서류 양식을 합의를 해서, 어디하고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첩 양식 저희들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 보완해서 나중에 말씀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래서 이첩 서류 자체가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8명을 과실치사라고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화근이 된 것이니까 이첩 서류 자체가 범죄의 가능성 있는 부분이 수사가 된 것이 내용만 정확히 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에 계신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원 다 하시니까 전원 다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있으신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안규백 위원 ADD 표지 같이 의혹과 관련해

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체 내열 재료 국산화 관련해서 관련 업체가 수입산을 국산화로, 보고용으로 둔갑시킨 보도가 있었는데 그 주 내용은 ADD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그 업체가 연구개발에 실패할 것을 우려를 해서 그게 국산화가 안 되니까 수입산을 국산화한 것처럼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하고 그리고 중간에 국과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내용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거둬들인 연구 실패로 조급한 나머지 이 업체가 표지 갈이를 해서 중국 위탁생산 또 시험 성적까지 조작을 한 의혹인데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 드러난 만큼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안규백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차관 또 법무관리관한테 문자를 받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군사보좌관이나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군사보좌관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내용을 공개는 할 수 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출을 했지만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 그 취지인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차관한테 문자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차관이나 법무관리관한테는 문자 받은 게 없고 군사보좌관한테 문자 받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규백 위원 아니, 군사보좌관한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군사보좌관하고 문자 주고받았던 중의 핵심은 하나는 제가 장관님하고 동시에 보냈던 장관님 귀국하신 이후에 이첩하겠다는 복명하는 것 하나였었고, 하나는 아까 조사본부로 건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첩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문자를 제가 군사보좌관한테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내용 이상 이하도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다음 이제 더 안 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예.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법무관리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시에 군인권보호관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한 적 있잖아요? 혹시 모르십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사망사건이 개시되면 인권보호관에게 바로 통지가 되고요, 인권보호관 측에서 사건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과정을 기다렸다가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군인권보호관 입회하에 경찰과 군의 수사가, 그러니까 조사가 실시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군인권보호관이 참여를 안 하게 된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됐는데 인권보호관에 대한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인권보호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권보호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진교 위원**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평시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민사로 넘긴 부분과 함께 이뤄졌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더욱더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뒀고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도 안 했고—그 문제는 제가 따로 따지겠습니다만—이 상황에서 국방부야말로 군인권보호관의 입회를 요청해서 좀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입회는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통보를 드리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고 인권보호관 측에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배진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지금 입회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아쉬운 건 이런 시기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잘 이용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군인권보호관들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군 내부에 객관적인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알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지한 것에 대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지한 경우 조사

내용의 누락이나 축소나 이렇게 해서 이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범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교 위원**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조사를 했던 사람이 누락이나 축소나 이렇게 해서 경찰에 이첩해서 나중에 사실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형법상에 정해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이고요, 또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비위 사실 통보나 이런 게 온다면 행정처분 쪽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마저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해병대사령관입니다.

○**배진교 위원**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본인이 어쨌든 조서를 다 했고 보고가 다 끝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장관이든 법무관리관이든 어떤, 지금이 얘기가 중간에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하고 인지한 부분을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본인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사령관께 혹시 얘기드린 바가 없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법무관리관과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이 이 상황이 앞으로, 법무관리관의 대답과 수사단장의 주장이 지금 다른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빼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가족한테도 얘기를 했고, 했잖아요? 사령관님한테 보고하고 가족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족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수사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축소 또는 누락이 될 텐데 그러면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인지한 사항을 수사하고 축소하고 누락한 것을 경찰에 이첩했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가족들은 다 언론이나 이렇게 알리게 될 텐데 그러면 수사단장 입장에서 수사단장이 처벌받는다고 하는 건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님께 수사단장이 얘기한 바가 없어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법무관리관하고의 의견 차이는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번 확인했던 것은 지휘·감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누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전 수사단장이. 지휘·감독에 대해서 수사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위원장 한기호 배진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들어가셨네요? 내가 한 번도 질의를 안 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죄명이나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 서류로 넘기자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그런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최초 전화 말씀하시

는 겁니까?

○윤후덕 위원 예.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최초에는 제가 군사법원법 취지상 그 혐의를 어쨌든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방법이라라는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법리를 검토하고 나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게 아니고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와 함께 설명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그런 전화를 했을 때에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법리 검토를 알려 주라고 한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이 지시한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확인한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장관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취지를 수사단장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 전화를 한 것은 사건을 전달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법리 검토를 한 것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장관님의 지시……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게 사건이예요, 아니면 법리 검토에 따른 장관의 지시사항이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법리 검토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장관님이 지시해서 전달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경에 결재를 하셨어요, 그 지점쯤에. 그 내용은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전화를 할 때 초기에는 결재 사항이 있었다, 결재 내용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고 했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몰랐습니다.

○윤후덕 위원 만약에 그 시점에서 원래 장관의 결재 그 내용 그리고 그 결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장관께 어떻게 건의를 드렸을까요,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많이 엉기게 됐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 생각에는 장관님의 판단이 인지를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 장관님이 다시 볼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지시를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이 보실 부분이 있으면 이첩보류 지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직책으로서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사건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장관님의 지시사항 인지를 물어봐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인 것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아닌 것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것은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밝혀 주고, 공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건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해 주라는 장관님 지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전달했고 군사법원법의 취지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시를 내린 바는 없고 ‘군사법원법 해석에 대한 제 의견을 장관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지시는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 법리적 문제를 설명해 줘라’였지 뭐를 넣고 빼고 그것을 지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이게 고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직무를 다 이행했는지, 아니면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해질 테고 그리고 그 내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게 사건인지 장관의 지시사항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본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변호인 측에서 계속 여러 자료를 내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사화 되거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저는 오해가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윤후덕 위원 특히 사령관님,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해병대 다시 자원해서 해병대로 간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다니는 사람이예요. 정말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통감하고 있고 빨리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없습니까?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신 위원님 시간까지 주신다 했는데……

○신원식 위원 6분 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니까……

○이채익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지.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위원장님, 승인을……

○위원장 한기호 질의해 보세요.

○김병주 위원 양당 간사가 합의한 것이면 좀 들어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알았어요.

○신원식 위원 하시고 추가시간 다 되면 주실 겁니다. 일단 하세요.

○김병주 위원 오케이. 일단은 시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해병대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아까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통화를 언제 했다고 그랬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8월 2일 이첩 이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장님이 본인이 휴가 중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첩된 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라면서 무슨 일이나고……

○김병주 위원 2일 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2일 날 16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고 질문을 하길래……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차관하고 가끔씩 통화합니까, 평시에도? 거의 전화 안 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차관하고는 평상시에 여러 가지로 많이 통화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자주 통화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자주 통화하는 것은 아니라 업무 있을 때는 통화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첩을 8월 2일 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10시 51분에 다급하게 ‘이첩 중지하라’ 이렇게 수사단장한테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제가 직접 지시해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10시에는 지시 안 하고 10시 51분에는 다급하게 지시를 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일정을 소화하고 마찬가지로 장관님 귀국하시면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할까 하고 불렀는데 그때 제 방에 와서 이첩했다고 전 수사단장이 보고를 했던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이첩했다는 사실을?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는 제일 먼저 장관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화로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유선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이 그때 뭐라고 하명하시던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일단은 최초에는 장관님께서 알았다고만 하셨고, 저도 당황했지만 아마 장관님께서도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인사 관련된 부분까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사와 인사 관련, 차관한테는 전화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차관한테는 거의 12시 다 돼서 전화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 검찰단장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조사를 했지요? 군검찰단장이 해병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누구 먼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주 위원 아니, 해병대사령관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군검찰단에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검찰단장이 최초에 제 방에 왔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 왔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8월 2일 그날 거의 과업 끝날 때쯤 왔던 것 같습니다. 한 17시경에 왔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날 최초에는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3시간 있으면서 이것 잘못되면 사령관님이 항명죄로 걸리니까 ‘이것 확실히 하라’ 이런 회유를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때 항명을 했다고 진술을 했던 모양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진술을 했길래 집단항명

수괴…… 그때 집단항명 수괴죄 얘기하던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게 내려왔길래 집단항명죄에 대해서 제가 검찰단
장한테 문의를 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라고 문의했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만
약에 2명 이상이 함께했다라면 그렇게 되는데 법
리적인 항목에 그렇게 명시가 됐다고 저한테 알
려 줬습니다.

○김병주 위원 군검찰단장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집단항명이라는 근거를
뭐로 잡았다고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2명……

○김병주 위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걸로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라고 얘기했
다고 하는데 들어 봤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이 엇그저께 그렇게 증언
하셨거든요. 군,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상급자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 못 받으면 집단항명 수
괴죄 걸려요. 너무 어마무시한 것을, 전화 안 받
았다고 어떻게 집단항명 수괴죄가 됩니까? 참 너
무나 어이없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몇 번, 계속 사령부로 내
려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
는 사령관실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시다.

○김병주 위원 그때 사령관님은 제가 봤을 때
명확히 ‘보류하라’ 이런 지시를 못 하고 계속 망
설였던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
님께서 명확하게 31일 날 지시를 하셨고 그다음
에 부사령관을 통해서 법리적인 검토는 법무관리
관하고 수사단장과 했고 그래서 전 수사단장이
수사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법무관리관에게 보냈
고 그래서 그다음 날 오전까지 제가 보고를 받기
로는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리
고 집단항명으로 부하들이 걸렸을 때 사령관 심
정은 어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

도 검찰단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집단항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
혀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사령관님은 집단항명 수
괴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
문에 명확하게 조사 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사령관님 생각은 그 당시
에 그러셨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
도 제 부하들이 집단항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진
실 여부를 밝혀 달라고 검찰단장한테 요구를 했
습시다.

○김병주 위원 이 정도면 통상 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안 들으면, 앞에서 다 결재하고 중간 커뮤니
케이션의 문제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지시 불
이행으로 해서 징계 사유 아닌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말
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아니, 통상 사령부에서 이 정도
의 사항이면,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할 때 이 정도 사항은 감사관에서 또
는 감찰에서 점검을 해서 지시 불이행인지 확인
을 하고 지시 불이행이라 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
재 말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
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
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
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
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
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
어요. 여러분들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들이 법도
잘 모르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것 3분을 다 쓰시고 1분을 더 쓰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사령관님, 수사단장한테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왜 보고하시게 됐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은 제가 결정했던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그 전에 국민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었던 것이 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내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단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하고 장관님께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총장께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총장님도 결재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였고 장관님께 보고드렸듯이 1사단장과 관련된 것은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장관님께 그대로 보고드린 후에 특별한 것 있으면 알려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총장과 장관께 보고드리는데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또 1사단장의 거취 문제까지 있어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재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침을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이해하신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동민 위원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로 이해하신 것은 아닌 거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고드리고 나서—외압은 아니라고 하니까—다른 주문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산으로 가 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군이 상명하복 체계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예. ○기동민 위원 그리고 장관의 명령은 대단히 지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사령관님의 명령도 대단히 지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이틀 사이에 장관의 잦은 지시, 차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장관의 참모들의 잦은 접촉 이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장관이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 소통이 안 돼서, 뭐가 답답해서 이 수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 내에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제가 모든 것은……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사령관님, 장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으셨어요. 부사령관이 직접 장관님한테 호출을 당해 가지고 가서 직접 지시를 받으셨어요. 차관이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과 통화했어요, 그리고 사령관님하고 통화했어요. 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야 되는 문제잖아요, 군대 상명하복 체계 내에서. 안 그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지시가 난무하는 겁니까? 그것도 수많은 억측을 낳을 수 있는, 무슨 안내를 했다, 또 수사단장은 구체적인 지시, 혐의 사실을 빼라고 했다, 장관님은 법무관리관에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라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혐의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없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보면 분명하게 장관께서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과하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게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오고 갔어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쫓 해 왔던 이런 과정들을 수사니 이런 정당한 법률용어가 아니라, 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시행령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정한 수사 규칙과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부정하면서 ‘검토했다’, ‘조사결과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사령관님께서도 중심과 원칙을 잃어 버린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씩씩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요.

마지막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조금 더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관님,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장관이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전례와 과정들이 쪽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장관님께서 앵무새처럼 되뇌셨지요. ‘외압은 없었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넣고 빼고 한적 없다’ 이런 말씀이 저렇게 강조하시는 것 보면 ‘과정 속에서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 버렸어요.

‘결재할 때 확신이 있었나?’, ‘확신은 없었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장관님께서 계속 ‘아닙니다. 제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외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대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셔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개입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단도 단출하게 만들고 군사경찰도 단출하게 만들어서 일선 지휘관들이나 상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근본적으로 거세시키려고 하는 방화벽을 지난번에 쳤던 겁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잘 정리가 되었고 이 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바로잡으신 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흐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 논란의 중심에 장관께서 서 계신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엄중한 책

임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래서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해병대사령관님과 중심에 서서, 이 사건의 실체는 대단히 단순하거든요. 이것을 한 사람 수사단장의 항명 이렇게 몰고 가는 촌극에 이 사건을 봉합하려 하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책무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끝마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말씀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 논란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진실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론이라든지 또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가끔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참모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 하고 답변드린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오해도 발생한 것도 있고 그런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관리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휴식 시간에 대화를 해 보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잘 안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외압이라든지 또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의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죄 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씌워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장관 이하 해병대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또 해병대사령관으로서 굉장히 덤덤하고, 만약에 박정훈 단장의 뜻대로 갔을 때 우리 군의 사기,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나마 두 분이 일견 오해를 받으면

서도 바로잡았던 부분은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항명죄 이것을 그래도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를 항명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세 가지를 구분하여 처벌한다.

첫째,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된다’.

정말 우리 군이 분단국가에 있는 군으로서 또 철저하게 계급, 위계가 제일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는 항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현안질의를 하면서 군사기밀과 수사기밀이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위원께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통째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검찰단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도 고발장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도대체……

○윤후덕 위원 아니야, 그것은 변호사가 보낸 건가 봐요.

○이채익 위원 군이, 그 고발장도 내가 볼 때는 전 수사단장이나……

○윤후덕 위원 변호사가 공개한 거예요.

○이채익 위원 전 수사단장의 변호사가 공개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우리 현안질의가 매우 왜곡되고 언론에 나온 이 부분을 전부 다 침소봉대해서 언론은 믿고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 등 우리 군의 지휘관 얘기는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서 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국민들께 이러한 불쌍사나운 모습을 안 보여 주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은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만든, 작성한 문건이예요. 무슨 군사기밀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드릴게요.

○이채익 위원 그래도 우리는 고발장 그것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법무사무실에서 보내 준 거예요.

○김병주 위원 의지만 있으면 다 추적을 하지요.

○위원장 한기호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갑석 위원 저는 특별하게 특정한 누구랄 것 없이 그냥 마지막 발언이니깐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죽 해 왔던 말씀인데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왜 이렇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군에서 단순한 명령이 자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서 왜 그 수많은 국방부의 지시가 단 하나의 공문, 문서로도 수행되지 않았을까? 참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상명하복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군이 옛날 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군기가 빠진 이런 군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불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군사법원법상의 불법성 때문에 그 명령을 해병대에서는 수행하려면 수행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명백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단 한장의 공문, 문서로 처리하지 않고 구두로만 구두로만 처리했던 겁니다.

또 하나, 해병은 여기에 더해서 해병의 명예라고 하는 큰 고민이 또한 이 문제를 쉽게 결정 못 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절의를 준비하면서요, 8월 1일 16시에 사령관께서 장관한테 복명했다—이첩보류에 대한—이것은…… 복명한 건 맞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 그 이후 해병대사령관 또 수사단장까지 포함한 수많은 해병대의 간부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합니다, 이 명백한 불법적인 지시 앞에서. 그다음에 우리들의 새끼인, 우리들의 사병인 해병이 사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이 치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심이었습니다. 이첩되기 전날까지……

사령관님,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령관께서는 몇 날 몇 시에 분명하게 지엄한 명령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8월 1일 날 6시 30분에 덕산스포텔이라고 하는 곳에 또 모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말 했지요, ‘저런 말 했지요?’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 그다음 날 아침까지, 9시 54분까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심하고 망설이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해병의 이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어디로 가 버리고 한 사병의 죽음의 진실은 축소되고 있고 또 한 장교는 징계위에 회부돼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장교가 사령관의 죄를 묻고 있고 이런 상황이 현재 해병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해병대를 몰았느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진실의 단계로 갈 것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예전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군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것은 그 누구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꿈도 꾸지를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군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절대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송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지시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사단장이 제외됐다, 장군이 제외됐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것을 의혹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단장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봐주려고 했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8명 중에서 다른 2명만 되고 나머지 6명이 제외된 이 죄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직 사단장 한 사람, 장군을 봐주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1사단장과 제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최초부터 말씀드렸지만 특정 사람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또 왜곡되기 시작하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많은 관계자들이 제가 만약에 언급했다면 그 많은 사람, 그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인, 특히 사단장 배제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두 번째는 전 수사단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유가족에게 이 수사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최종적으로 8명을 과실치사로 하겠다는 것도 유가족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령관님한테 보고하거나 해군총장님, 장관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가족한테 얘기해 댔는데 이것을 번복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격지

심이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데……

유가족에게 실제로 수사기록을 또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원칙은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또 그분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시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심적 부담은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래서 유가족에게 그 수사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돼서 번복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얘기했다든가 한 게 없다면……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그것을 이첩했다는 자체가 무언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용한 것이 무엇이나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하네요.

이제 다 정상적인……

○김병주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한기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

○신원식 위원 시간 또 주신답니다.

○위원장 한기호 밤새워 하세요.

○김병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령관님, 7월 28일 날 사령관님이 수사단장한테 수사결과 이런 걸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나서 오후에 안보실의 김대령이 ‘사령관님께 보고한 그 내용 좀 보내 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해병대사령부에서 거절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 아니라 수사단으로 연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안보실에서는 조금 전에 확인했

지만 7월 21일 날부터 수사계획서도 보내 달라, 7월 28일 날 사령관 보고서를 보내 달라, 7월 30일 날 언론 브리핑을 보내 달라 등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이 됐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군참모차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질문사항, 포항지청에서 해군 군검찰에 언제 몇 번 전화, 어떤 내용을 했지요? 확인했지요?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사……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확인 안 했어요? 지금 빨리 나가서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장관님,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 얘기와 차관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차관이 한 번 보고를 했고 그럴 때 장관님은 차관한테 인사조치와 엄정한 수사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차관은 장관님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차관이 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겁니까?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12시 17분에 차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해서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때 수사, 인사조치, 법적 조치를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검찰단장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 다 통화하고 마지막으로 차관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와서, 우리 의원실에 양당 간사하고 와서 보고할 때 본인은 이첩에 대한 내용만 장관한테 보고했고 그 이후에 장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관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차관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차관이 답변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거짓말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착각에 의해서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지 제가 위원님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저는 장관이 출장 가 있기 때문에 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계속 본인은 보고 외에는 한 게 없다라고 발뺌을 해서, 차관답지 않은 이런 태도가 보여서 제가 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난번 전체회의 때 확인하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위원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이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수사 기획부터 언론브리핑 자료까지 조직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해병대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김 대령이 주요 사항들에서 본인이 업무를 파악하기차 요청했던 것이고 수사계획서 자체라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인원들이 몇 명, 해병대 수사관들이 몇 명이 가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궁금해 해서 보내 준 자료로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분명한 것은 조직적인 어떠한 개입이나 그러한 것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조직적인 개입이에요, 수사에 대한 외압이고. 수사를 왜 계획을 보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사 계획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사단장이나 군단장 때 수사계획도 안 봤어요. 그걸 왜 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자꾸 ‘수사, 수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수

사단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니고 입건 전 조사입니다.

○**김병주 위원** 어쨌거나, 수사든 조사든간에 그런 것이지요.

○**기동민 위원** 발언 기회 주십니까?

○**위원장 한기호** 질의하세요.

○**기동민 위원** 얘기를 끝마치려고 하다가 장관님 저 말씀만 주시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장관님 산하에 있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런 수사기관들의 정당한 행위마저 너무 그렇게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고 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법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작은 조문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우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넘기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충분히 다른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가 가장 큰 의문점 중의 하나가 왜 해병대 수사단장께서 저렇게 직을 걸고 또 아들의 명예까지 걸고 저렇게 할까? 저는 그분 자체분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듣고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모든 걸 다 걸고 이번 사건에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유가족들에게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령관께 보고를 28일 날 드리고 30일 날 장관님과 해군참모총장한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가족들한테 설명한 것이잖아요. 사실관계가 뒤집혀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정말 지금도 궁금증이 남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동들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차관 답변과 제 답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관이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은 8월 1일에 대한 질문이신 걸로 생각하고 8월 1일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첩 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일에는 통화했다고 답변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에요, 그때 8월 2일 날, 그것은 8월 2일 날 이첩한 사실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관님이 장관님한테 우즈베키스탄에 전화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장관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 그때 대답이어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여러 번 재차 물었어요.

법무관리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날 다 기록을 하고 너무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해서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기호**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또 추가질의 안 됩니까? 계속 준다면서요?

○**위원장 한기호** 또 하세요?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한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 계속 저 혼자 하나까 미안해서 더 못 하겠네요.

사령관님 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령관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7월 31일 보류 지시가 있고 8월 2일 날 이첩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 수사단장을 몇 번 만났나요? 수도 없이 만났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전체회의 할 때도 만나고 개별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녁 식사도 같이하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류에 대한 것 플러스 뭘 뻔까, 뭘 더할까,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될 텐데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평소 전 수사단장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근무 형태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계환** 수사단장 직책을 수행할 때 또 해병대 군사 병과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군인의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 것이지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사실 사령관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첩시켰다고 봐요. 이첩을 국방부 안대로 보류하고 수정해도 나중에 문제될 것이고 법과 규정대로 해도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령관님은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오늘 가서 보니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를 지금도 ‘SEA OF JAPAN’으로 하고 있어요. 대응반은 아까 어떻게 됐느냐 질의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태평양사 대응반?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인도태평양사 대응반은 캅(COP)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캅을 운영 안 해도 인도태평양사 홈페이지에 가서 사항을 공유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방부장관 이종섭** 훈련과 인도태평양사의 지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SEA OF JAPAN’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관님 저것 보고 뭘 느끼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미 측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100% 다 입장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들어 줄 때도 있고 또 미 측 입장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 문제는 이번 UFS 연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아니, 연습이 아니더라도 저것은 장관님이 미국방장관이나 태평양사령관이나 연합사령관 만났을 때 이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 적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을 꼭 관철시키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병주 위원**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해군참모차장님, 확인했습니까?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예, 연해구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별도의 지명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저것은 됐고요. 내가 물은 것은 포항지청 검사들이 해군의 군검사한테 전화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몇 분,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예, 확인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 포항지청 군검사가, 저희 해군검찰단 2부 3과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군검사에게 다섯 번 전화를 했습니다. 다섯 번 전화를 해서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냐라고 문의를 했고 또 우리 군 검사들이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정도로 해 가지고 답변을 했다 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민간검사들이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언제 전화했지요, 그 전화를?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현재 첫 번째는 변사체 검시 후에 있었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이에 네 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시는 장관님도 그렇고 해병대사령관도 그렇고 너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대통령안보실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개입도 하고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 윗선까지 개입했을 합리적인 의

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장관님이나 여기 사령관님이나 중심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검찰이나 이런 데는 실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오후에 군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있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제가 그것은 정리할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아직 보고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제가 정리할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 정정할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수사기록을 통째로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수사기록은 제가 알기로 980 쪽이예요.

그런데 그날, 저기 수사본부에서 나오신 분, 수사기록이 몇 쪽이지요? 제가 그때 조사본부장한테 보고받기로.....

○**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 김진락** 정확하게 987 페이지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980쪽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980쪽인데 법사위 제가 그때 다 봤습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님 기록은 한 20쪽도 안 돼요. 그것이 수사기록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통째로 공개됐다고 합니까? 이것은 이채익 위원님 확인하시고 여기서 정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은 김의겸 의원님하고 의견교환을 한 것이 아니예요. 그날 영상 보세요. 10쪽에서 15쪽 짜리 서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보받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980쪽은 아니고 통째로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이것은 나중에 이채익 위원님이 수용해서 말씀하시면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의 업무 종료에 따른 국방부 인수여건 보고’ 내용은 우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것과 같이 국방부에서 보고를 해 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맨 밑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종료 시에도 국방부에서 재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 국방부에서 보고 안 합니까, 서면 말고?

○**위원장 한기호** 국방부에서 보고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나 누구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인수는 현재 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건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무 수행 여건 보시면 지금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이사관이 조사단장으로 되어 있고 전문성이 갖춰진 조직입니다. 특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되었을 때 군조사본부 조사단이 가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 마찬가지로 갖추어져 있고 객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110명이 있던 업무를 어떻게 18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때는 진상 건수가 많아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지금은 진정이 더 이상 없는 상태고 추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진상조사 안 한 게 엄청나게 많다고 위원장님 말씀했고, 여기 예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기존의 위원회 예산이 70억이었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예산은 기존에 있는 국방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예산 1년에 약 1억 13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70억 들던 게 1억으로 가능하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기본적으로 군의 조

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예산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판단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제가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첫 번째는 유족이 신청을 해서 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직자가 3만 9000에 이르는 이런 점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1955년, 56년 미순직자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56년 것은 마쳤는데요. 그 해에 3000명이 돌아가시고 1122명이 미순직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군이 작성한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결과 이 가운데 한 40%에 이르는 436명이 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에서 특히 특정한 질병에 해당되는 사람을 순직으로 96년·97년에 분류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분들만 해도 그 가운데 236명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군이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식에 의하니까 오래된 사건 50년대·60년대 이런 때는 유족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고 또 유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모르고 또 무엇이, 어떤 형태의 죽음이 순직이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족이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보훈의 또는 그 순직의 어떤 결정적인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더 이상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해서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순직과 보훈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 전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의 전사망 민원조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적합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잘 알았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병주 위원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 발언한 김의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현안보고 질의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통째 발언, ‘20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발언했느냐’ 하는데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병주 위원께서는 위원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계속 이렇게 따지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실 며칠 동안 거의 참을 자지 못하고, 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그 부분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또 과대 포장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동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했다,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됐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원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입니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김의겸 의원께서도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수사기록을 이렇게 보이면 그게 통째로 수사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사기록이 몇 장인지 그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까지 동료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사실 발언하면서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말씀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통째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길도 없고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읽었다고 하는 부분을……

○김병주 위원 기자회견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기호 두 분 다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대해서 ‘통째로’라는 표현 자체가 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한 것은 오늘 김병주 위원

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라는 것이, 통째로는 아니라는 것을, 통이라는 게 아까 몇백 페이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채익 위원님도 그게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현승 위원, 배진교 위원, 이상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됐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위원장 한기호 끝내십시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기 동 민	김 병 주	배 진 교	설 훈
성 일 중	송 갑 석	송 옥 주	신 원 식
안 규 백	윤 재 옥	윤 후 덕	이 채 익
이 현 승	임 병 현	정 성 호	한 기 호

○청가 위원(1인)

이 재 명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이 종 섭	
기 획 조 정 실 장	강 완 구	
국 방 정 책 실 장	허 태 근	
인 사 복 지 실 장	김 성 준	
자 원 관 리 실 장	성 일	
기 획 관 리 관	유 균 혜	
계 획 예 산 관	신 태 복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대 변 인	전 하 규	

정 책 기 획 관	김 수 광
국 제 정 책 관	이 승 범
인 사 기 획 관	오 영 대
동 원 기 획 관	염 주 성
보 건 복 지 관	김 은 성
군사시설기획관	천 승 현
전 력 정 책 국 장	원 중 대
국 방 혁신 기 획 관	주 광 섭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양 성 태
주한미군기지사임단장	구 홍 모
합 동 참 모 차 장	박 웅
육 군 참 모 차 장	고 현 석
해 군 참 모 차 장	강 동 훈
공 군 참 모 차 장	이 상 학
해병대사령부	
사 령 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김 계 환
부 사 령 관	정 중 범
국 방 부 조 사 본 부 장	김 진 락
수 사 단 장	
병무청	
청 장	이 기 식
기 획 조 정 관	홍 승 미
병 역 자 원 국 장	임 재 하
입 영 동 원 국 장	장 현 서
사 회 복 무 국 장	최 구 기
방위사업청	
청 장	엄 동 환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 현 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 경 호
기 획 조 정 관	정 기 영
방위사업정책국장	한 경 수
합 정 사 업 부 장	방 극 철
정 책 조 정 담 당 관	신 현 승
재 정 담 당 관	정 범 승
방위사업미래혁신담당관	조 준 현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 지 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 선 태
군 사 망 사 고	
진 상 규 명 위 원 장	송 기 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이현승 · 이주환 · 전봉민 · 정운천 ·
홍석준 · 박성민 · 하영제 · 신원식 · 윤상현 ·
서병수 · 이달곤 · 박덕흠 · 강민국 · 김미애 의원

발의)

8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윤재옥 · 양금희 · 김형동 · 홍석준 ·
이인선 · 김용관 · 김상훈 · 정희용 · 박형수 ·
김석기 · 임병현 · 金炳旭 · 김정재 · 임이자 ·
주호영 · 윤두현 · 송갑석 · 양향자 · 이병훈 ·
김승수 · 김희국 · 이용빈 · 민병덕 · 김태호 ·
이양수 · 조명희 · 백종현 · 김영식 · 강대식 ·
민형배 · 이용호 · 지성호 · 장동혁 · 전주혜 ·
엄태영 · 윤영덕 · 구자근 · 이형석 · 권은희 ·
이만희 · 서일준 · 이개호 · 윤재갑 · 신정훈 ·
전봉민 · 박정하 · 조수진 · 최승재 · 한무경 ·
조은희 · 김예지 · 태영호 · 이종성 · 배준영 ·
정경희 · 이주환 · 박대출 · 류성걸 · 송언석 ·
서정숙 · 김성원 · 김희곤 · 박성민 · 유의동 ·
김영선 · 강기윤 · 노용호 · 김원이 · 권명호 ·
조오섭 · 강민국 · 서범수 · 문진석 · 한정애 ·
김승남 · 배현진 · 최종윤 · 신원식 · 서영석 ·
최춘식 · 전재수 · 허종식 · 홍정민 · 정운천 ·
안병길 · 하영제 · 이재정 · 박성준 · 주철현 ·
허영 · 인재근 · 최연숙 · 박덕흠 · 허은아 ·
최형두 · 강은미 · 윤영석 · 김경만 · 윤주경 ·
이원욱 · 박홍근 · 김정호 · 이종배 · 윤창현 ·
김성주 · 김홍걸 · 조해진 · 정동만 · 안호영 ·
전해철 · 유상범 · 이원택 · 서동용 · 최영희 ·
윤준병 · 우상호 · 한병도 · 신영대 · 양경숙 ·
조경태 · 박성중 · 유정주 · 안철수 · 정우택 ·
박대수 · 소병훈 · 홍문표 · 유경준 · 남인순 ·
김미애 · 송석준 · 이달곤 · 권성동 · 오영환 ·
안규백 · 소병철 · 서영교 · 이용 · 김병욱 ·
유동수 · 최재형 · 서병수 · 임호선 · 이동주 ·
윤호중 · 한기호 · 박정 · 민홍철 · 임종성 ·
양기대 · 김한규 · 정춘숙 · 최강욱 · 김한정 ·
박용진 · 정태호 · 김두관 · 한준호 · 김영호 ·
김종민 · 성일종 · 이상현 · 박수영 · 진선미 ·
이현승 · 정점식 · 이채익 · 홍익표 · 강준현 ·
김학용 · 윤상현 · 장제원 · 김도읍 · 홍성국 ·
하태경 · 김의겸 · 김영주 · 박찬대 · 이정문 ·
이학영 · 김상희 · 이철규 · 이용우 · 도종환 ·
진성준 · 강선우 · 김주영 · 윤영찬 · 김태년 ·
정성호 · 우원식 · 이수진 · 권칠승 · 양이원영 ·
김기현 · 이상민 · 정진석 · 황희 · 박주민 ·

최기상 · 최인호 · 정필모 · 유기홍 · 김민석 ·
최혜영 · 이명수 · 맹성규 · 김웅 · 윤한홍 ·
김민철 · 이태규 · 홍영표 · 이소영 · 박광온 ·
송기현 · 오기형 · 이장섭 · 임오경 · 김성환 ·
장경태 · 김수홍 · 송재호 · 위성곤 · 김승원 ·
이인영 · 어기구 · 이재명 · 고영인 · 이용선 ·
전용기 · 정일영 · 김민기 · 장철민 · 문정복 ·
이해식 · 전혜숙 · 박범계 · 강병원 · 박재호 ·
김용민 · 강훈식 · 권인숙 · 정청래 · 신현영 ·
황운하 · 강득구 · 김경협 · 박상혁 · 이수진(비) ·
설훈 · 백혜련 · 윤후덕 · 고용진 · 홍기원 ·
이탄희 · 김영배 · 권영세 · 변재일 · 서삼석 ·
황보승희 · 김병기 의원 발의)

8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 부처	공포 일자
대통령령	제33667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2023. 8. 16.
대통령령	제336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2023. 8. 16.